

# 공판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사 건 2015고합329 명예훼손

피 고 인 박 유 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박유하의 변호인은, 귀원의 2016. 4. 22. 공판준비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다 음

### 1. 서론

(1)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① 위안부를 일본국에 애국적 자긍적 협력자로 표현하였고, ②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표현하였으며, ③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을 부정)함으로써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첫째,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적도 없고,

둘째,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을 통하여 ① 위안부를 일본국에 애국적 자긍적 협력자로 표현한 바도 없고, ②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표현한 적도 없으며, ③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을 부

정)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2) 피고인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은, <기초사실>과 <범죄사실>, 그리고 고소인측이 지목하고 민사재판부가 2015. 2.에 그 일부를 인정한 34개 항목에 1항목을 추가한 <범죄일람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는, 책의 전체적인 그리고 부분적인 문맥을 무시하고, '고소인측의 오독(기초적인 사항도 수없는 오독을 반복하였습니다)에 더해 곡해로 가득한, 악의적인 고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어이없는 기소입니다.

(3) 피고인은 이 서면을 통하여, <범죄일람표>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판부의 공판 준비명령, 즉 '위법성 조각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무엇인지, 즉 피고인이 어떠한 자료를 참조하고, 어떠한 취재와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떠한 연구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서적을 서술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는 명령에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자료집'은 그 '증거설명서'와 함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하에서는 <범죄일람표>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공소장 본문의 <기초사실>, <범죄사실> 부분을 반박합니다.

## 2. 공소장의 <기초 사실>에 대하여

(1)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찰이 <기초사실>에 실시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러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의 서술부분(즉, <범죄일람표>기재 각 항목의 서술부분)이 범죄일람표 <비고>란의 내용,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을 통하여 ①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자긍적 협력자로 표현하였고, ②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표현하였으며, ③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을 부정)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의 근거로 먼저 <기초사실>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초사실이 있는데 박유하가 엉뚱한 거짓말을 하였으니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검찰이 말하는 <기초사실>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을 통하여 ①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자긍적 협력자로 표현하였고, ②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표현하였으며, ③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을 부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검찰은 학계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도 전혀 조사하지 않고, 고소인측의 왜곡된 의견을 그대로 베꼈을 뿐입니다

(4) 이하 검찰이 언급한 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고노담화

1) 검찰은 ‘피고인이 고노담화를 부정한 것’처럼 고노담화를 기초자료로 제시합니다.

① 그러나 피고인은 고노담화를 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높이 평가했습니다.(책 173면-176면 참조)

② 그리고 피고인은,

“고노담화가 인정한 것은 우리의 이미지·총칼로 무장한 군인이 강제로 끌어갔다’는 ‘강제성’은 아니다. 요청은 군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업자들이 한 감언이나 강압이라는 제3의 강제성만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선반도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고 요청을 한 주체가 군이니,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간접적 강제성에 대해서도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 고노담화다”라고 전제한 후(175면 7줄-12줄), “일본은 조선의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욕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이 ‘조선반도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결과. 즉 식민지배라는, 정신적 강제체제하의 일이었다고 인정했던 것이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175면 14줄-17줄)

‘또한 “‘조선인 위안부’ 문제는 성차별과 계급차별 이상으로 ‘식민지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었고, 고노담화는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응답한 담화였다”고 평가하였던 것입니다.(176면 3줄-6줄)

2) 그럼에도 검찰이 ‘피고인이 고노담화를 부정한 것’처럼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피고인이 '일본의 양심으로 여겨져 온 고노담화(그나마 고노담화가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위안부 문제 책임을 부정하는 일부 일본인들이 고노담화를 폐기하라고 요구한 최근 몇 년 전입니다)를 박유하가 부정한 것 같은 인상을 재판부 및 일반인에게 심어, 책을 읽지 않은 이들을 향해 피고인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② 두 번째, (책을 읽었을 경우입니다만) 피고인의 정확한 고노담화 해석을 완전히 무시하고, '고노담화가 물리적 강제성을 인정한 것'처럼 말해 온 지원단체 등 관계자들의 그간의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검찰이 책을 읽지 않았거나, 아니면 20여년의 기존 인식에 갇혀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성이 결여되고 만 결과라 하겠습니다.

3) 고소인측이나 검찰은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피고인이 한국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움을 표했던 우리 안의 책임자(대부분의 업자와 유괴범, 그리고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가족과 이웃)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 했던 서술 부분'만을 떼어내어, 그 서술 부분에서 '피고인이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이 책 중 일본을 향해 일본의 책임을 서술한 부분'에서 이를 충분히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향해 한국의 문제에 대해 서술한 부분'에 일본에 대한 비판이 없다고 억지를 부린 셈입니다.

(나) 유엔 등 해외에서의 인식

검찰은 '피고인의 인식이 해외의 인식에 반하는 것'처럼 말하기 위해, 유엔보고서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증거자료로 고소인측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엔 등의 자료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① 이 자료들 대부분이 지원단체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② 그러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문에 '세계의 상식에 이의제기를 하는 셈'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피고인이 '지원단체 등이 한국에 유리한 부분만 전달한 결과, 그동안 한국에서는 한국의 인식이 전부 맞는 것으로만 인식된 유엔보고서'에 반하는 인상을 만들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1)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1998)

검찰은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일본에 대해 한 권고만 쓰고 있고, 이후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권고는 이후 대부분 실현되었습니다. 즉, 정부 차원의 손해배상(1997년 일본 정부가 주도한 아시아여성기금발족, 보상금 지급), 일

본 정부의 문서 및 자료 공개(종군위안부 자료 집성 5권으로 출판하고, 인터넷 공개), 서면에 의한 공적인 사죄(기금 전달시 총리의 편지로 표현), 역사적 사실의 교과서 게재 등입니다.

1997년 시점에서 일본 교과서의 대부분에 위안부 문제가 실렸었습니다.

다시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사라지거나 수정되기 시작한 것은, 그 기술이 <강제연행>에 치중되어 있어 그러한 기술에 반발한 이들이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된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실을 지원단체와 고소인측이 인식하지 못했거나 말하지 않은 탓에, 여론과 국민이 오랜 세월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재판부나 검찰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마땅함에도, 피고인의 반박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이행하지 못한 것은, <범행자 확인 및 처벌>부분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어떤 죄목을 범행자로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사태를 우선 정확히 봐야 합니다.

피고인이 시도한 일은 바로 그것이었음에도, 고소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방식만을 옳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국가권력을 동원한 입막음’에 나섰습니다.

또한 검찰 역시, 고소인측과 똑같이 책을 왜곡하여 발표함으로써 전국민의 비난을 야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2) 맥두걸 보고서

맥두걸 보고서는 지원 단체의 법적책임 요구 주장에 손을 들어 준 보고서입니다.

이 맥두걸 보고서는 '지원단체가 주장한 <강제연행> 주장'에 기반을 둔 보고서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책을 통하여 그런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서술하였던 것입니다.(제1부1장 `강제연행과 국민동원 사이`)

### 3) 미하원의 결의/유럽 등 타국 의회의 결의

2007년에 나온 미하원의 결의는, 시간이 흘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결과 위안부 문제의 기반이 인신매매임을 인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제낙태 등을 일본군의 소행으로 말하고 강조해 보수의원들까지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여성의 증언에 자극을 받은 유럽이나 캐나다 의회 등도 이 결정을 그대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결정이 '네덜란드인에 대하여 행해진 일과 조선의 위안부를 대상으로 행해진 일의 차이'를 보지 못해 일어난 일임을 서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에 대한 주동자는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도 서술하였습니다. 동시에 미하원의 결의가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을 높이 평가한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한국 사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 4) 유엔인권이사회

검찰은 이 외에도 유엔인권이사회의 보고서나 권고를 <기초사실>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나 성차별금지위원회에서 정대협이 전 대표들(정진성 서울대 교수, 신혜수 이화여대 교수)이 각각 이사나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들의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은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지원단체의 목소리가 이러한 보고서들에 검증 없이 반영된 배경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5) 검찰이 제시하는 <기초사실>은, 검찰이 결국 일부 학자나 지원단체의 기존 인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책임 그러한 기존 인식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여 기소에 이른 것입니다.

한국 언론이 공식적으로 인신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일입니다.

피고인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해명해 보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의 책임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위안부라는 대상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된, 학제간 연구, 융합학문서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나 법학자들이 피고인의 책임을 폄하하는 것은, 이

책이 자신들의 학문체계나 이론을 넘어선 이론과 체계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시도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에 기반한 비판과 요구를 하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안을 바라는 피고인의 마음이 만든 집필인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인식으로 오해가 깊어져 한일관계가 날로 험악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일본전문가이자 학자로서의 양심과,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시킨 일이기도 합니다.

### 3. 공소장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1) 검찰이 피고인에게 <범죄>라 하는 것은, <일본군에 애국적 협력자였음을 표현><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 강조(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했다고 하는 3개 사항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니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2) 검찰의 이러한 기소(고소인축의 고소)는 ‘잘못된 독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라유키상의 후예. 위안부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문장을, 검찰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의 앞뒤를 보면, 피고인은 가라유키를 매춘부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가라유키를 <가난해서 팔려간 소녀><국가의 세력확장에 따라 이동/당한 여성들><일본인 여성>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매춘이 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가난해서 이동당한 일본인여성들>은 부지기수였으며, 조선인 위안부란 그러한 틀 안에 들어가게 된 존재라는 것이, 피고인이 '가라유키상의 후예'라는 말에 담은 뜻입니다.

그녀들은 매춘이 아니고도 여러 직종에 있었으며, 매춘업은 어디까지나 그 일부일 뿐이므로 '가라유키=매춘'이 되지도 않습니다.

피고인은 <가라유키의 본질은 매춘>이라고 쓰지 않았고, 따라서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가라유키의 후예'라는 표현으로 박유하가 무엇보다 강조하고자 한 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입니다. 일본군의 의뢰가 먼저 있었고 실제로 동원 대상이 되었던 건 일본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한 위안부 제도에서 자국민을 <강제연행>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었고, 식민지화되어 <일본제국>의 일부가 된 식민지에서도 <연행>이란 <공식적으로> 지시될 수 없는 일이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이 지적은 지극히 자의적인 오독일 뿐 아니라 악의적 허위라 하겠습니다.

(3) 그럼에도 조선인 위안부에게 <물리적 강제>를 가한 것은 군대이기 이전에 업자들이며, 일본군은 위안부들을 차별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폭행을 금지했다는 점, 업자들에게 계약서를 확인해 본인 혹은 부모의 의사를 확인

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따로 상세하게 밝히겠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자들이 지적하지 않았음은 물론, <제국의 위안부>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료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 피고인이 이 책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특히 후반에는 <애국을 종용>하는 시대를 살았고, 따라서 <강제>하지 않고도 모집이 가능했으며 위안소는 주로 <관리매춘>의 형태를 띠었음을 각 항목별로 설명할 것입니다.

(4) 피고인이 <애국>을 말한 것은, '위안부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당시 식민지의 정황을 아는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연구한 결과입니다.

식민지에 대해서도 일본이 애국을 강요하는 과정이 있었고, <일선동조론>이니 <내선일체>결혼 등은 그런 시대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시대의 한 가운데에 위안부도 놓여 있었음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본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성들이 그런 슬픈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창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언급은 다른 학자들,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발견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인식은 주로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집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고, 그 골자는 이미 10년 전에 <화해를 위해서>라는 책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문화관광부의 우수교양도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도 발간 직후에 여러 매체들이 진지한 관심을 갖고 인터뷰와 보도를 해준 바 있습니다.

(5) 피고인의 책은, 검찰이 말하는 것과 달리,

(가)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커녕 반복적으로 성노예적 측면이 있음을 기술했다는 점, 따라서 <위안부의 본질은 매춘>이라고 쓰  
기논커녕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 비판한 책이라는 점

(나) 원고로 기명된 11인 할머니들이 직접 수류탄을 나르거나 일본군의 빨래를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의 위안소가 <애국><고향><평화>라는 이  
름을 달았던 데서 이미 위안부제도가 <애국>의 틀에 편입된 제도였다는 점,

당사자들이 그러한 선전을 알았거나 믿었는지 여부를 떠나, 위안부에게  
요구된 역할이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며, 박유하가 그런 정황을 굳이 설명한  
것은,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정책과 사고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희생구도에 들어가기 쉽게 만든 국가시스템에 대한 비판이고,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점, 즉 원고나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위안부가 일본에 애국적 협력자>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 결국 피고인이 기존 <강제성>인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강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눈에 띄는 강제성’ 이상으로 ‘교묘한  
강제성-<구조적 강제성>’이라고 이미 피고인이 10년 전에 자신의 저서에서  
도 기술했던 개념을 더욱 명확히 강조해 일본의 책임을 정확히 물으려 한 책

이라는 점

등을 밝힐 것입니다.

(6) 이 집필은 결국 강제성 증거에만 집착해 20여년 세월을 흘려보낸 연구자 및 지원단체의 노고를 덜고, 한국/일본사회에 이 문제에 관한 공통의 인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밝힐 것입니다.

4. 전국민의 지지와 후원을 받아온 지원단체가 한 학자의 책을 고발한다는,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검찰은 독립적 입장에 서서 고소인 측 주장도 충분히 재검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재검증 없이 기존 인식에 얽매어 기소에 나섰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발적 매춘부’라고 썼다고 보도 자료에 써서 배포한 일은, 그리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을 전국민의 지탄을 받도록 한 일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5. 이하에서는 <범죄일람표>에 있는 35개 항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적으로, 공판준비명령 중 ‘서증 및 그 입증취지’에 관련된 부분은, 그 양이 방대하여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번 1, 책 19쪽>

### 1. 검찰 기소 내용

센다는 '위안부'를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면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19면 8줄 - 20면 3줄

센다는 '위안부'를,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전쟁 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센다의 시각은 이후에 나온 그 어떤 책보다도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

사실 위안부들의 증언집을 단 한 권만 펼쳐보아도, '위안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의 이미지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은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동안 지원자들과 부정자들이 위안부에 대해 가져온 상반되는 이미지는 자신들이 보고 싶은 이미지를 벗어나는 증언은 보지 못했거나 무시한 결과물이다.

그건 꼭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나온 관련 연구와 발언들이 이 문제를 식민지배와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로서 다루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일본’(군)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일, 그에 따른 ‘사죄와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서 있는 현실정치에 대해 논하는 일이 되면서 그런 ‘현실적 목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것이다. 센다의 책이 ‘조선인 위안부’의 비극에 대한 사죄의식을 가지면서도 거칠게나마 위안부의 전체 모습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현실정치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일 것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은 책의 맨 앞 시작 부분입니다.

(2) 피고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알린 최초의 저널리스트 센다 가쿠의 책의 인용을 모두 부분에 가져온 이유는, 비록 2005년에 낸 피고인의 책 <화해를 위해서>에서도 <“애국종용”의 틀에 들어가 있던 위안부>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이 센다의 책을 접하게 되었기에 앞선 연구에 대한 존중의 뜻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한국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90년대 이후이지만, 센다 가쿠는 1970년대 초부터 <목소리 없는 여성 8만명의 고발, 종군위안부> 등 여러 저작을 통해 이 문제를 알려 왔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인 위안부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에 처음 주목한 것은 일본인이었습니다. 물론 1965년에 만들어진 정창화 감독의 영화 <사르빈강에 노을이 진다> 등에 조선인 위안부가 등장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보이지만 위안부 자체에 주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이 문제에 먼저 주목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가져온 것이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자들은 센다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일본인의 시각에 의존했다’고 비판합니다).

(3) 검찰의 지적은 전적으로 고소인과 고소인을 지원해 온 지원단체와 기존 연구자들의 시각에 의존한 것입니다. 이들은 기존 시각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편협성과 그 밖의 이유로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하려 합니다. 그런 시각이, 이들로 하여금 본서의 기술에서 자신들의 기존 시각에 반하는 기술을 무조건 <문제 있는 것>으로(심지어 범죄로) 치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자신들과 같은 목적(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고 그에 따른 해결을 도모하여, 오랫동안 고통 받아 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집필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책을 엉뚱하게 해독하고 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은 처음 피고인을 고발할 당시 109곳을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원단체를 비판한 부분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할머니를 명예훼손했다면서 정대협과 나눔의 집 등 지원단체에 대한 비판 부분을 지목하며 판매금지 해야 하는 책으로 지목한 것은, 지원자들이 주도한 고발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낸 부분입니다.

(4) 검찰은 이들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부분을 지목하여 ‘피고인이 <위안부가 애국적 협력자였음을 표현>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하의 이유로 이러한 검찰의 지적 자체가 독해의 기본조차 무시

한 야만적인 지적임을 말하겠습니다.

(가)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센다가 위안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라는 점에 대하여 서술한 부분입니다. ‘피고인의 표현’ 이 아닙니다.

이 책에는, 센다가 “위안부란 군인의 전쟁수행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며 도운 애국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고 분명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19면 8 줄 - 9 줄).

피고인은 이 시각을 센다와 공유하지만, 이 부분에서 피고인은 “위안부는 애국적 협력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지적은 지적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바로 다음 부분. 검찰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즉 피고인은 “국가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왜 위안부에게는 없느냐는 것이 이 책의 관심사이자 주장”이라고 명백히 서술하고 있습니다(19면 10 줄 -12 줄).

따라서 피고인이 센다의 책을 평가한 것은 위안부가 “애국한 존재”임을 적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를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의 범주에 넣어 고찰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쓴 것처럼 피고인 역시 이 시각을 2005년에 집필한 책<화해를 위해서>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지만, 피고인보다 앞서 같은 시각을 제시한 이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다) “결론”(19면 12줄)이란, 피고인의 센다의 책에 대한 평가(결론)이며, 여기서는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19면 12줄)고 한 부분에서의 위안부의 본질이란 “국가에 의해 희생이 요구된 개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은 그 부분을 평가한 것입니다.

(5) 따라서 해당 구절은 결코 피고인이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한 부분’이 아닙니다. 즉 검찰이 말하는 명예훼손일 수 없습니다.

## <순번 2, 책 32쪽>

### 1. 검찰 기소 내용

“가라유키상의 후에 위안부의 본질은 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31면 19줄 - 32면 13줄

그것은 분명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이었지만, 외국에서 서러운 음지생활을 하던 그들에게는 그 역할은 자신에 대한 긍지가 되어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수 있다. “싱가포르 근처에는 거의 6000명의 가라유키상이 있었고 1년에 1000달러를 벌었는데, 그 돈을 일본인들이 빌려 상업을 했”(232쪽)다는 이야기는 해외의 가라유키상들이 일본 국가의 국민으로 당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라유키상의 후에.’ ‘위안부’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간 ‘이동’이 더 쉬워진 근대에, 경제·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타국으로 떠났던 남성들(군대도 그 하나다)을 현지에 묶어두기 위해 동원되었던 이들이 ‘가라유키상’이었던 것이다(가라유키상의 첫 상대가 일본 항구에 정박한 러시아 군인이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성적 위무’를 포함한 ‘고향’의 역할이었다. 일본의 가난한 지역의 가난한 소녀들이 해외로 멀리 보내져 신산한 삶을 보냈던 상황은 야마자키 도모코의 『산다칸8번 창기집』에도 잘 그려져 있다. 야마자키가 취재한 나가사키의 ‘가라유키상’은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에 의해 업자에게 팔려 멀리 영국의 식민지였던 보르네오의 항구 산다칸까지 가게 된 여성이었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도 책의 모두 부분으로서, ‘일본의 어떤 사회구조가 위안부라는 존재를 발상하고 만들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살피는 부분입니다.

(2) 검찰은 피고인이 “가라유키”를 그저 “매춘부”로 정의한 것처럼 간주하지만, 피고인은 이 책에서 “가라유키”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가) 이 책에서 피고인은 그 소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가라유키를 “국가의 세력확장에 따라 이동하는 여자들”로 정의합니다(27면 15줄). 그리고 위안부가 생기기 전에 “어린소녀들을 유괴하다시피 데려가 외국으로 팔아넘기는 일”이 많았음을 지적하고(27면 18줄 -19줄), “그들은 팔려가면서도 오로지 부모와 집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심성고운 딸들”을 “고향사람들은 고마운 마음까지 담아 가라유키상이라고 불렀다”고 쓰고 있습니다(27면 21줄-28면 4줄). 이들이 “현해탄을 넘어 한국과 중국각지에 만들어진 공창에 팔려 나갔다”고 쓴 후(27면 4줄 -5줄), “원래는 ‘해외로 돈 벌러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던 ‘가라유키상’은, 나중에는 바다 건너로 팔려간 여자들을 칭하는 말이 되었다”면서(28면 12줄 -13줄), “확대된 국가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흐름”의 “욕망에 동원”된(29면 5줄 - 6줄), “속아 팔려온 소녀들이나 살 길이 막막했던 가난한 여성들”(30면 14줄 -15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훗날의 ‘조선인 위안부’의 전신은 가라유키상, 즉 일본인 여성들이었다. 그들 역시 가난한 시골처녀들이었고, 감언이설에 속거나 부모의 뜻에 따라 팔려간 희생한 이들이었다. 말하자면 ‘일본인 위안

부' 역시 가부장제와 국가의, '가난한 여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만들어 낸 존재였다" (30 면 30 면 17 줄-21 줄)고 기술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술을 근거로, ① 첫째, 일본군 위안부의 대상은 우선 일본인 여성이었다는 사실, ② 둘째, 가난 때문에 팔려간 여성들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가라유키상'과 '위안부'를 연계시켰던 것입니다.

(다) '가라유키상과 위안부가 매춘업에 넘겨졌는지 여부'는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3) 이 부분은 처음에는 가난한 일본 여성들이 "가라유키상으로 팔려나갔고, 나중에 그런 가라유키상을 대체한 것이 '식민지의 가난한 조선인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기술이며, 여기서의 "위안부의 본질"이란 "가난한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지적은 후에 지적하는 것처럼 위안부가 관리매춘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가라유키를 매춘부로만 간주한 고소인측(검찰)의 선입견'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만든 오독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절은 결코 피고인이 '위안부의 본질은 매춘'이라고 한 부이 아닙니다. 즉 검찰이 말하는 명예훼손일 수 없습니다.

## <순번 3, 책 33쪽>

### 1. 검찰 기소 내용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33면 7줄 -34면 3줄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차별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안부의 불행을 만든 것은 민족 요인보다도 먼저, 가난과 남성우월주의적 가부장제와 국가주의였다.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가 생기게 된 것은 이들의 위치를 조선인 여성들이 대체한 결과였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식민지화와 식민지로 이식된 공창제도가 있었고, 중간매개자들은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존재였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서술 부분에서의 “본질”이란 ‘창기’가 아니라 ‘일본인’, ‘고통’입니다.

(2)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가라유키"란 "팔려간 가난한 일본인 소녀/여성들"입니다. 그중에는 '매춘을 강요당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매춘'이란 '그 자체로 강제노동과 학대와 그에 따른 병과 죽음이 따르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이른바 가라유키도 겪었고,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가 겪었던 고통이 창기가 되기도 했던 일본인가라유키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같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의 의도는 이 부분 서술에 앞서는 이하의 표현들에서 명백합니다.

즉 피고인은, "일본군 위안부 중에는 일본인도 적지 않았다"(20면 11줄), "유괴범들에게 이끌려 어린 소녀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일본이 묵인했던 것"(29면 1줄 - 2줄), "확대된 국가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흐름이었고, 그런 욕망에 동원된 것이 '가라유키상'이었다"(29면 5줄 - 6줄), "나쁜 사람의 손에 걸려 감언에 속아..."(29면 13줄 - 14줄), "그들은 기껏해야 2,30엔을 벌기 위해 조선으로 건너가 작부가 될 뿐 아니라 어떤 일이든 포주가 하는 대로 맡기겠다는 증서--부모의 수락서를 갖고 있다"(30면 1줄 - 3줄),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기 전부터 많이 한국에 건너와 살았다. 그 중에는 속아 팔려온 소녀들이나 살길이 막막했던 가난한 여성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들의 이동을 묵인하고 조장한 건 국가권력과 민간업자들이었다"(30면 13줄 - 16줄), "그들 역시 가난한 시골처녀들이었고, 감언이설에 속거나 부모의 뜻에 따라 팔려간 이들이었다. 말하자면 일본인 위안부역시 가부장제와 국가의 '가난한 여성'-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만들어 낸 존재였다."(30면 18줄 - 21줄), "사회최하계층에서 고통스럽게 일하던 여성"(31면 11줄), "국가와 남성에 의한 피해자"(31면 17줄)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인/조선인 사이에 ‘차별이 존재했다’고도 명백히 기술하고 있습니다(33면 9줄).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검찰의 의식이 ‘매춘을 하게 된 여성들에 대해 차별적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고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그저 강제연행으로만 알려져 왔지만 위안부 제도가 많은 부분 인신매매에 의거한다는 사실은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안부의 “고통”은 ‘기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고통이고, 일본인과 조선인 양쪽에서 공통되는 구조를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기소 역시 오독이 만든 지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의 본질은 일본인 조선인등의 극적과 상관없이 사회구조가 만든 “고통”이었음을 알리고자 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에 관련해 일본군위안부의 대상은 원래는 일본인이었음을 말하려 한 것입니다.

해당 구절은 피고인이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한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적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순번 4, 책 38쪽>

### 1. 검찰 기소 내용

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

→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37면 19줄 - 38면 10줄

말하자면 아시아 각지에 존재했던 매춘시설이 모두 '일본군 위안소'였던 것은 아니다. 여러 종류의 '공창'과 '사창'이 존재했고, '일본군'이 관리하고 공식적으로 병사들이 이용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군이 허가한 '공창'뿐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중국 등 전쟁을 한 점령지에는 여성에 대한 '강간'도 많았지만, 이런 식의 '공창'에 있던 여성들도 있었다. 그렇게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여성들을 똑같이 '위안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본군은, 기존의 공창과 사창만으로는 모자라 '위안부'를 더 모집하기로 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위안부'의 대다수는 '가라유키상' 같은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한다. 300만 명을 넘는 군대가 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에까지 머무르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바람에 수많은 여성들이 필요시된 데에 따라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위안부'였다. 하지만 '현지 처녀들이 공창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모든 위안부가 똑같이 일본군에게 '유괴'나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말해준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피고인은 가라유키상의 ‘본질’을 “매춘”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여기서 말한 “가라유키상의 이중성”이란 ‘동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가는 경우’도 있었음을 말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역시 국가, 사회, 혹은 가정의 구조적 강제에 의한 것임은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적에 결코 비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 이동이 설사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간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은 그들이 가난하고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한 여성이기 때문이었음’을 앞선 부분에서 반복해 지적한 데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중성이란 그런 아이러니를 표현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단신으로 나라를 떠나 밀항을 기도한 여자”(29면 12줄 -13 줄), “앞장서서 돌보았다”(31면 9줄), “낭자군”(31면 11줄), “국가를 위한 역할”(31면 13줄), “애국자의 역할”(31면 17줄), “금지가 되어 살아가는 힘”(31면 29줄), “성적위무를 포함한 고향의 역할”(32면 7줄-8줄), “야전 우편국에서 매일 고향으로 송금”(34면 5줄) 등이라고 서술한 후, 동원당하면 서도 그와 반하는 것처럼 드러난 모습들을 두고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황은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성을 만든 것은 여성들을 이동하게 만든 “국가의 부조리한 책략”(31면 19줄)이라고 명확하게 쓰고 있고,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국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들이 공창제도에 흡수되거나 사창에서 일했음’을 서술하였다 해도, 이 부분의 기술이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지적은 다른 학자들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이 부분 기소 역시 오독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이 구절도 피고인이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한 부분이 아닙니다.

## <순번 5, 책 38쪽>

### 1. 검찰 기소 내용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 강조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38면 17줄-21줄

물론 군인이나 헌병에 의해 끌려간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피고인은 '위안부의 동원'을 "국가의 세력 확장에 따른 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사 표면적 형태가 "국가/군에 의한 직접적 강제동원"이 아니라 해도 (일본정부/군을 포함한) '국가와 군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2) 20년 이상 지원단체들은 일본의 “강제동원/강제연행”을 기정사실로 믿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본서에 썼습니다. 시초는 정신대 동원을 위안부 동원으로 착각한 데에 있습니다), 일본의 “법적책임”을 추궁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본 정부’와 사이에 존재한 인식의 차이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지연시켜 온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해, 양측의 인식차이를 좁히고자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3) ‘위안부 동원에서의 물리적인 강제성의 주체’는 대부분 주변사람이거나 업자거나 유괴범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요를 만들어낸 일본 국가와 군의 책임’을 물었고, 이는 이 책의 다른 부분, 즉 일본을 향해 비판하고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부분에 충분히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서술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을 강조하였다’는 식으로, ‘피고인이 마치 강제성 전부를 부정한 것’처럼 몰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리고 피고인은,

① “조선땅”이라는 말을 넣어, 이러한 사태가 ‘식민지의 결과로 일본제국의 일부가 되어 버린 한반도’에 한한 일이고(네덜란드 등 적국에서의 물리적 강제성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동시에 “공적으로는”이라는 말을 넣어, 개인적인 일탈의 가능성을 시사했고 구조적 강제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일본군은 업자에게 사기나 강제가 없도록 지시했고 사기임을 알았을 경우 다른 곳에 취직

하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경찰도 유괴범을 단속했고 수양딸이라는 이름의 인신매매노예제도를 철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이나 검찰은 그러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고소인측과 지원단체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인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오랜 기간 관여해 온 연구와 운동의 발상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5) 피고인의 이러한 서술은, 전부 일본에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지를 묻기 위한 고찰의 일환입니다. 물론 그 목적도 일본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책임을 물어 ‘그동안 반성의식이 없었던 일본인들’에게 ‘그들의 주장들 중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주장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 사회의식을 촉구하기 위한 데에 있습니다.

같은 일을 보더라도 그 사항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쓰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같은 사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즉 “역사와 마주하는 태도”에 대해 쓴 책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그렇듯, 국가 간의 갈등도 결국은 사실 제시 이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이 책의 1장을 “강제연행과 국민동원 사이”로 제목을 붙였습니다(17면 2줄). 그리고 “강제로 끌어간 건 누구인지”를 묻고(업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협력), 국가의 세력확장과 위안부의 수요증가에 따라 위안부

제도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이동 당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조적강제”로 설명했습니다.

이 지적의 말미에는 “국가가 수요를 만든 것”이 명확히 지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에서 생각해오던 “강제연행”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을 뿐입니다.

데려간 다음 강간을 당한 케이스가 많고, 그에 따른 일본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것이 곧 <강제 연행 >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이 통상적으로 생각해온 바로 그런 형태의 <강제 연행> 이 아니더라도 “일본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책은 물론 강연과 인터뷰 등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6)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보아야 하고, 이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구조적 강제성>과 <현실적 강제성>의 주체가 각각 누구였는지를 보아야 한다”(27면 11줄 - 13줄)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입니다.

피고인은 이 점에 관하여, “사실, 몇 권의 증언집 속에서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말하는 위안부는 오히려 소수다. 증언자의 대다수가 이런 식의 유혹을 받고 집을 떠났다고 말한다.”(25면 2줄 -4줄), “당시엔 위안부 모집 광고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는데(83쪽<사진4> 참조), 그 사실 역시 위안부가 공적인 ‘모집’ 대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25면 15줄-16줄), “그런 의미에서는 타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오랫동안 전쟁을 벌임으로써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점만으로도 일본은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첫 번째 주체이다. 더구나 규제를 했다고는 하지만 불법적인 모집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집 자체를 중지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도

일본군의 책임은 크다. 목인은 곧 가담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25면 20줄-24줄), “하지만 위안부들의 불행을 만든 주체가 일본군(구조적 강제성의 주체)뿐 아니라 그녀들을 보낸 사람이나 학대한 사람들이기도 한 이상, 그런 그들의 범죄를 묻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구조적인 강제성과 현실적인 강제성의 주체가 각각 누구였는지를 보아야 한다.”(27면 9줄-13줄)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하에 피고인이 참고한 자료 중 본 서적에 인용/첨부한 부분만 우선 첨부합니다.

(가) 신문광고

① 83면 상단의 ‘사진 4’



사진 4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44년 10월 27일자(위)와 『경성일보』 1944년 7월 28일자(아래)에 실린 ‘위안부’ 모집 광고. ‘18세 이상 30세 이내의 신체 건강한 자’ ‘누십명’을 ‘허 씨’가, 그리고 ‘7세 이상 23세까지’ ‘이미이 소개소’가 급히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양쪽 다 가는 곳이 군부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② 광고-아래는 위 신문 (경성일보 및 매일신보)광고중 위안부 공개 모집 광고를 확대한 것입니다.



<위안부 시급히 대모집><군위안부 급히 모집>

(나) 위안부들의 증언

① 40면 9줄-15줄

“내가 열일곱 살 되던 해인 1938년에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와서 광목공장에 취직할 사람을 모집하고 다녔다. 그 사람은 동네 구장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하룻밤을 자고 어디론가 떠났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의 묵인 아래 동네일을 보는 구장을 따라 광목공장에 취직하러 나서게 되었다. 우리 집은 술장사, 밥장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동네 사람, 지서 주임, 면장, 구장, 반장까지도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서

주임이 나를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 같고 동네의 구장, 반장이 나서서 나를 끌어냈다.”(『강제2』, 169쪽)

② 47면 15줄-48면 1줄

“저녁이라도 준비한다고 혼자 논두렁에서 썩을 캐고 있는데, 3,4대가 량 되어 보이는 남자가 오더니, 이런 고생 하지 말고 배불리 먹을 것도 주고 좋은 신발도 주는 곳을 알아봐준다고 자기만 따라오라고 해서” 가게 되는 식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중간에 무서워져서 우는 “그녀의 뺨을 때리더니 강압적으로 다시 그녀에게 길을 재촉”한 것도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인 남자’였다(이국언, 74~75쪽). ‘공장에 보내준다고 속여 데려간 남자는 “공장에 간다고 하더니 이야기가 다르지 않느냐고 하자 김 씨는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며 우리를 일본 사람에게 넘기고 사라져버렸다”(『강제1』, 87쪽).

③ 52면 3줄-54면 6줄

“열다섯 살이 되는 해에 설날에 내가 함천에 있는 우리 작은할아버지네로 갔어. 작은할머니가 사랑에 어떤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드렸지. 그 남자가 마흔 살이 넘는 그 동네 이장이었어. 인사하고 몇 달쯤 후에 그 남자가 나를 찾아왔어. 복숭아나무에 꽃핀 3월이나 4월쯤 봄이야. 만으로 열네살이었어(1942년). (중략) 안 가려고 했는데 이장이 잠깐이면 된다고 나를 잡아끌고 올라갔지. 갔더니 야트막한 산 위에 행길이 있는데 거기 짐차가 와 있더라구. 타라고 해서 탔지. (중략) 그 차를 타고 대구까

지 왔어. 대구에서 나는 그 이장과 어떤 집으로 갔고 다른 여자들은 그 차를 타고 그냥 갔어. (종락) 하룻저녁인가 자고서 그 이장이 나를 부산의 방직회사까지 데리고 갔어.”(『강제3』, 193~194쪽)

“산으로 봄에, 봄에 인자, 친구 둘하고 셋이서 나물 캐러 갔는데 일본 남자 하나하고 한국 남자 하나가 쪼꼬만 도라크(트럭) 차에서 내려서 곁으로 오더라고. 그 사람들이 과자를 주면서 “따라가면 밥도 하얀 쌀밥에다 고기반찬에다 해주고, 뭐 과자도 주고 옷도 좋은 옷을 입혀준다” 그러더라고. 내 나이 열세 살이었어요.”(같은 책, 222쪽)

“며칠이 지난 후 분순이랑 강가에 가서 고동을 잡고 있었는데 저쪽 언덕 위에 서있는 웬 노인과 일본 남자가 보였다. 노인이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키니까 남자가 우리 쪽으로 내려왔다. 노인은 곧 가버리고 남자가 우리에게 손짓으로 가자고 했다.(『강제1』, 124쪽)”

“그날도 언니들과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일본인 한 명과 그 사람의 앞잡이인 듯한 조선인 한 사람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일본인은 당코바지를 입고 있었고 조선인은 바지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아버지가 조명길에서 바둑을 두면서 너를 찾고 계신다”고 말했다. 같이 놀던 애들은 코를 훌쩍거리면서 어디론가 도망쳤다. 나는 열두 살이었지만 키도 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있어서 열다섯살쯤으로 보였다. 전에 아버지가 똑똑하다고 심부름을 시킨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들을 따라갔다. 조명길로 데려가서 그들은 나를 골방에 밀어넣었다. 거기에는 이미 나처럼 속아서 온 여자들이 세 명 있었다.”(같은 책, 136쪽)

“그러자 세 살 위인 오빠가 계집애를 가르쳐서 어디에 쓰느냐면서 학교를 못 다니게 했다. 오빠는 학교에 못 가게 책을 모두 아궁이에 넣어 불 태워버리면서 계집애는 공부 가르치면 바람난다고 했다. 그래도 내가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자 오빠는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때리지 못하니까 서당으로 끌고 가서 낮으로 찢러 죽인다고까지 했다. 나는 옆집의 키가 큰 언니가 학교를 다니는 것이 무척 부러웠다.

학교에 못 가게 했기 때문에 그해(아홉살) 늦은 봄에 엄마에게도 말을 안 하고 고모가 사는 서울로 도망쳤다.(같은 책, 183쪽)”

첫 번째 증언에서 짐차에 태워 간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동네 이장이었다. 세 번째 증언을 한 소녀가 여기저기 전전하다 공장으로 가는 줄 알고 ‘위안부’가 된 나이는 열다섯 살이다. 이처럼,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가 된 경우는 대부분 주변 사람이 속여 데려가거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보호공간이 되지 못한 경우다.

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자신을 위안소에 보냈다고 생각하는 한 위안부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원망 때문에 “임종 때 사람을 보냈으나 나는 가지 않았다. 딸을 어떻게 그런 곳에 보낼 수 있는가 하는 원망의 마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강제2』, 181쪽)고 말한다.”

‘위안부’들이 위안부가 되기까지의 정황은 이렇게 하나가 아니었다. ‘강제로 끌려간 20만 명의 소녀’라는 인식은 정신대와 위안부의 혼동, 업자 등 주변 가담자의 소거, 예외적인 사례를 일반화한 수용이 만든 상이었

다.

④ 별도로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의 전화통화 및 영상기록 내용을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3) 증언(돌려보낸 정황)

① 76면 11줄-20줄

“내가 고향에 가야 하는데 우리가 부모도 모르게 여기 왔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지. 그래갖고 그 장교들이 서둘더니 명령 짝 내려갔고, 야단났는디 데려다주라고. 이 불쌍한 애들 왜 데리고 왔냐고. 무카야마 소사, 곤도 소사, 다카하시 주사, 뭐 이런 사람들이 주인을 불러갖고 이거 어디서 데리고 왔느냐, 이거 델고 온 그 자리 갖다놓으라고. 그래서 그놈도 데리고 온 그 자리 꼭 갖다놓드만그려. (중략) 이 아까운 거를 한참 피는 것을 어디서 데리고 왔느냐고 이놈 거기 있던 자리 갖다놓으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를 아깝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짐승이래 불쌍한 거 날려보내 주는거, 그 맘이 들었던가봐요. (중략) 그 여자들, 같이 있던 여자들 서너 명 되는거 해방시켜 같이 전부 한국으로 나왔어.”(『강제2』, 169쪽)

## <순번 6, 책 61쪽>

### 1. 검찰 기소 내용 .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 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금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자긍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61면 14줄 - 62면 8줄

국가가 일본인을 비롯한 '제국의 위안부'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 바로 이런 것이었다. 성적 착취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앞둔 군인을 '후방의 인간'을 대표하여 '전방'에서 '위안'하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역할. 말하자면 '위안부'에게는 신체적 '위안'뿐 아니라 정신적 '위안'까지도 요구되고 있었다. 그녀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고 무슨 날이면 '국방부인회'의 옷을 갈아입고 기모노 위에 띠를 두르고 참여한 것은 그래서였다. 그것은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이었지만,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자기 존재에 대한 (다소 무리한) 금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조선인 일본군'이 그랬듯이, '애국'의 대상이 조선이 아닌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일본군 위안부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딜레마를 잊고 눈앞에 주어진 '거짓 애국'과 '위안'에 몰두하는 것은 그녀들에겐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군과의 연애나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딜레마를 안을 것을 포기한 이들의 선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혹은 어리면 어릴수록 일본인의식이 강했을 터이니 딜레마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이 훨씬 많았을 수도 있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 앞에는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에게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이란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황국신민서사나 국방부인회에 관한 언급은 그런 “정신적 ‘위안’까지도 요구되 ”는 시대상황을 보충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위안부가 일본국에 자궁적 협력자라고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다른 부분에서 다시 언급되므로 여기에서 배경과 사실을 설명해 둡니다.

일본은 전쟁을 하면서, 조선인에게도 애국을 강요하며 “황국신민”이 될 것을 요구하는 교육을 행했습니다.

황국신민교육은 잘 알려진 것처럼 같은 천황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동화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얼마나 내면화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 책에서는 그러한 내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본격적 전쟁을 맞아 식민지통치체제에서 실시된 애국교육과 운동이 실시된 시기에 위안부시스템도 가동되었음을 지적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부당한 요구였지만 그런 구조가 있었기에 위안부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폭행하는 군인들을 헌병에게 고발하는 등 맞서는 일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표면적이거나 <같은 일본인>임을 인식하는 일에는 일반사회에서 받았던 차별에 의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193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조직되고 조선에도 파급된 조직인 국방부인회, 혹은 청년단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참여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온 예기, 유곽등도 술선수범해 참여했습니다. 일본인에게들이 “우리도 일본여성”이라고 하면서 가입했다는 사실은 그러한 차별구조를 보여줍니다.

“위안부가 될 때, 전쟁터에 도착해서 이런 몸이 된 나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58면 19줄-20줄)라는 증언에도 그런 심리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심리를 피고인은 “금지”로 표현하면서도 “다소 무리한”(61면 21줄)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러한 심리가 그저 “가혹한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술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난한 여성들을 동원하면서 “애국”의 미끼를 던져 자타에 자신을 합리화 여지를 주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처럼, 피고인은 위안부의 또 다른 역할에 주목했지만, “정신적 위안”에 ‘비판(비난)의 의미’를 담기는커녕 제국국가의 책략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이에 앞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약간의 자존감을 높

여주는 일이었을 뿐, ‘위안’이라는 이름의 노동이 대부분의 ‘위안부’들에게 성과 신체를 혹사당하는 가혹한 노동이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녀들에게 여전히 ‘위안부’ 생활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일 수밖에 없었다”(59면 17줄-21줄)고 쓴 데서도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지적된 부분에서 이러한 정황을 “국가가 멋대로 부과한 역할”(61면 20줄)이라고 명기한 데서 피고인의 시각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3) 검찰의 이 부분 기소 역시 그러한 맥락을 무시한, 거친 오독의 결과지만,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가 “정신적위안”도 협조 요구된 존재였다는 사실,현실적 협력이 요구된 정황에 관해 관련자료를 본서에서 사용된 것만 제시합니다.

① 애국식당 사진 (63면 상단)

위안소 이름이 <애국식당>이라는 데서 위안소에 어떤 역할이 기대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진 3 '제국의 위안부'는 신체적 '위안'뿐 아니라 정신적 '위안'까지 요구받았고, 그 '애국'의 대상이 일본이었다는 데에 '조선인 위안부'들의 딜레마가 있었다. 1939년 8월 스좌장(石左莊)의 요리집(위안소)을 걷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코쿠 쇼쿠도(愛國堂)'를 찍은 이 사진에는 "병사들의 출신지가 제각각이어서 각 향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으니, 이름하여 '아이코쿠 쇼쿠도', 고심 끝에 작명되었을 터이다. 희한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젊은 중국인의 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② 56면 7줄-57면 5줄

“위안소는 바왕청에 큰 것이 있었고 카오청현에 출장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왕청은 통과하는 부대가 많은 교통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대규모 위안소가 필요했던 거겠지요. 카오청현의 위안소는 현지 주둔부대용이고 위안부 숫자도 적어서 각 부대별로 날짜를 정해 이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긴 경비주둔, 특히 우리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미군 비행기의 공격에 대비하는 부대는 그 시간만 지나면 한가합니다. 고참병은 요령 좋게 외출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중략) 게다가 오랜 주둔생활 기간에 같은 위안

부들과 지내다 보면 부인 같은 느낌이 되는지 군인들도 그렇게 허겁지겁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은 않게 됩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였지요. 그래서 그녀들은 주둔부대의 일원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또 장식품이라고 할까, 위안부가 없는 주둔부대는 과자를 갖고 있지 않은 아이처럼 품이 안 난달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녀들을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위안부들도 그에 부응해서 휴일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선물을 가지고 와서 빨래를 해주거나 진지 옆에서 기관총을 손질하는 군인 옆에서 턱을 괴고 바라보고 있거나 꽃을 꺾거나 하기도 했는데, 하늘에서는 종달새가 노래하니 평화로운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군인들도 (위안부들에게) 점심을 먹이거나 하고 있었습니다. 주둔지에서의 군인과 위안부 관계는 어디든 이렇게 아니었나 합니다. 하긴 빨래야 군인들은 초년병 때부터 훈련을 받아 익숙해져 있으니 (술장사하는) 여자들보다는 더 잘했지만요. 다만 그런(그녀들이 빨래도 해주는) 성의를 기뻐했습니다. 하긴 조선인 위안부 쪽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지 빨래를 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65~66쪽)

③ 57면 16줄- 18줄

“간호원도 배운다고 배웠지. 미국 사람이 뭐시가(비행기가) 오는 거 같으면 총도 맞추면 이것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고 호다이(붕대)를 갖다가 어디 맞으면 어떻게 감으라 카는 거 그거 연신 배와주고 놀 여개가 없어요.”(『강제로 끌려간 조선인위안부들 5』, 139쪽)

④ 57면 19줄-58면 2줄

“거기가 일선이라도 군인들 큰 전쟁 나가서 돌아오면 기모노 입고 에프론 하고 고쿠로사마데시타(‘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보통 때는 몸 빼 입고 안 그러면 스카트 같은 거 입고. 기모노는 겨울거 여름거 봄거. 도시 가서 돈 주고 사야지. 인기카이(원문에는 괄호 안에 ‘송별회’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연예회’[여흥을 곁들인 술자리]의 잘못된 일본어발음일 가능성이 크다-인용자) 같은 거 하거든요.”(같은 책, 140쪽)

⑤ 58면 7줄-10줄

“대동아전쟁 나고 거기 있는 여자들이 다 훈련받았지. 아침이면 다 나와서 모두 체조하고, 군대식으로 똑같이 훈련받았지. 신작로 운동장에서 훈련을 달 받은 받았어. 수류탄 던지는 거 그거는 거 부대서. 부대서 거기서 훈련시키는 사람 있어.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군인이지.”(같은 책, 140쪽)

⑥ 58면 19줄-59면 6줄」

“위안부가 될 때, 전쟁터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이런 몸이 된 나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전선의 위안소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후방 병참기지에 있게 되면 점차 생활에 익숙해진다고 할까 지쳐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전방에서는 군인들과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본인들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주려고 생각했지요. 군인들도 우리를 보면 ‘수고가 많네’”

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후방으로 가면 정말로 공동변소취급인 것예요. 장교나 하사관들 중엔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요.”(센타 가코, 81~82쪽)

⑦ 59면 7줄-10줄

“즐거웠던 일은, 글썄요. 내 경우에는 역시 시코쿠 사람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것도 아이치라든가 마쓰야마라든가,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뻐졌지요. 군인들도 마치 가족을 만난 것처럼, 성관계를 빼고 고향의 축제나 산이나 강 얘기를 같이 하곤 했어요. 군인들도 그걸로 만족했지요.”(같은 책, 82쪽)

⑧ 159면 8줄- 10줄

“전쟁이 난 후 갱이를 들고 우리가 보국구덩이를 팠다. 섬을 돌아다니면서 공습을 피했는데 그런 때 양은칠과 임창수가 나를 들것에 업고 다니기도 했다. 나는 몸이 회복된 다음에 폭발탄을 날라주기도 했다.”

⑨ 162면 4줄-13줄

“진송에서처럼 다이징에서도 겨울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군인을 받지 않는 날 아침에 일본 병사들 무덤에 풀을 뜯고 향을 꽂고 빗자루로 쓸어주기도 하고 합장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죽어서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뼈를 묻은 군인들이었다. 눈이 오는 추운 때에도 높은 산에 올라가

그 일을 하였다. 무덤을 찾아 다닐 때에는 무덤자리를 아는 사람이 데리고 다녔다. 노는 날에는 피물은 군복이나 이불을 빨아서 꺾매 들여보냈다.”

“또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환송하러 나가고 돌아오면 환영하러 나갔다 어쩌다 시간이 나면 소방대 훈련과 가마니를 세워놓고 창을 찌르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소방대 훈련은 진송 때부터 있었는데 이때는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몸빼를 입었다.”(『강제2』, 177쪽)

## <순번 7, 책 62쪽>

### 1. 검찰 기소 내용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고 싶었겠지만요(26 쪽)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62면 12줄 -64면 13줄 참조

응모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런 몸이 된 나도 군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서 내지에 돌아가도 다시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고 싶었겠지만요.(26쪽)

물론 이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경우다. 그러나 조선인 위안부 역시 ‘일본 제국의 위안부’였던 이상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패전 전후에 위안부들이 부상병을 간호하기도 하고 빨래와 바느질을 하기도 했던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사유리’(작은 백합), ‘스즈란’(방울꽃), ‘모모코’(복사꽃) 같은 일본이름으로 불렸다(「하얀 논밭」, 12쪽)는 것도, 식민지인이 ‘위안부’가 되는 일이란 ‘대체일본인’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의 「춘부전春婦伝」이라는 소설의 첫머리에 는 군대의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위안부’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고향집이 가난”해서 “선수금에 팔려 위안부가 된” 이들인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원래 있었던 텐진天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희망하여 군인의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중이다. 모두 일본이름으로 불렸던 이들은 트럭 15대 가운데 “앞에서 다섯 번째 트럭”이었다.

하루미(주인공 조선인 위안부-인용자) 등이 새로 옮겨온 집은 성내 북문 가까이 있었다. 민가를 개조한 집인데, 위안부院子를 중심으로 그녀들의 방이 있었고, 바깥에는 ‘히노데칸日の出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여자들은 이전부터 있던 여자들을 포함해 여섯 명이었다. 세 집 건너 이웃에 ‘기미노야君の屋’라는 집이 있었다. 여기에도 여자들이 네 명 있었다. 이 정도 되는 여자들이 이 현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부근 일대를 경비하는 1개 대대의 군인들을—1000명에 가까운 욕망으로 넘치는 젊은 군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춘부전」, 112쪽)

이 소설은 ‘위안부’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동할 수도 있었다는 것, 이동은 군인이 맡았다는 것, 군은 이들을 군부대가 주둔하는 ‘같은 시’ 다른 지역에 있는 ‘여관’이라 이름 붙은 위안소로 이동시켜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일본군’의 깊은 관여/관리 사실과 함께 위안부의 ‘자유’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들 ‘열 명’이 ‘1000명’을 상대해야 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들의 ‘위안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은 ‘위안부가 일본에 애국적 자궁적 협력자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안부는, 오로지 몸만을 착취당하는 위치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제국 국가로부터 애국과 헌신을 강요당했으며, 참혹한 상황에서도 그 애국심과 헌신을 내면화하는 일을 통해 그 상황을 견뎌내려 하기도 했다는 서술입니다.

(2) 또한 조선인의 경우, 전쟁터에서 “일본의 부분으로서” “일본인의 편”으로 인식되었기에, “기본적인 관계는 같다.” 라고 표현한 것일 뿐,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점은 이 책의 다른 서술을 참고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군인들 큰 전쟁 나가서 돌아오면 기모노 입고 에프론 하고 고쿠로사 마데시타(‘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57면 19줄-20줄), “직업군인이었던 어떤 이는 중국인 등보다 조선인 위안부들을 더 많이 모집한 것은 그녀들이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적에게 통보하거나 군사정보를 흘리는 일이 없었”(121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조선인 위안부’는 그렇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점령지/전투지의 여성들과 구별되는 존재였다. 말하자면 일본군과의 기본적인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달랐다. 식민지가 된 조선과 대만의 위안부들은 어디까지나 ‘준일본인’으로서 제국의 일원이었고(물론 실제로는 결코 ‘일본인’일 수 없는 차별이 있었다), 군인들의 전쟁 수행을 돕는 관계였다. 그것이 ‘조선인 위안부’의 기본 역할이었다.”(60면 10줄 -18줄) 등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도 오독으로 인한 지적에 해당합니다.

## <순번 8, 책 65쪽>

### 1. 검찰 기소 내용

가족과 고향을 떠나 떠나면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많은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제국 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들 수 있었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64면 21줄 - 65면 끝줄

그러나 동시에 『춘부전』은 ‘병사’에게 호감을 갖고 마지막에는 함께 죽는 위안부를 그리고 있다. 실제로 위안부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자살 소동을 벌이는 군인이 없지 않았으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위안부’로서의 가혹한 생활 속에서도 연애는 존재할 수 있었다.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군인들은 난폭하고 샷쿠(콘돔-인용자)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얼굴, 옷, 신발 등이 온통 먼지투성이였다. 전투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다소 온순하고, 이제 자기는 필요없다고 잔돈 부스러기를 놓아두고 가기도 했다. 전투에 나가면서 무섭다고 우는 군인들도 있었다. 그럴 때 나는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위로해주기도 했다. 정말 살아서 다시 오면 반가워하고 기뻐했다. 이러한 중에 단골로 오는 군인들도 꽤 되었다. “사랑한다”, “결혼하자”는 말도 들었다.(『강제 1』, 53쪽)

속아서 간 경우건 자원해서 간 경우건 ‘위안부’의 역할은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이었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 떠나면 전쟁터에서 내일이면 죽을

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 그 기본적인 역할은 수없는 예외를 낳았지만,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요구된 ‘조선인 위안부’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도 싹틀 수 있었다. “하루이틀 전쟁하면, 저 산비탈에 갈 거 같으면, 중국 여자들 있으면 강제적으로 옷을 벗겨갖고 참 누워 자고 그란다고. 군인들이 저거가 그랬다고 그러지. 그럼 불쌍하게 중국 여자 그랬냐고 그러지. (우리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옷 벗기고 그러지 않지”(『강제 5』, 133쪽)라는 말에서처럼, 중국인 여성과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게는 다른 존재였던 것이다.

그래서 위안부들은 말한다. “진송처럼 촌구석의 군인들은 이동이 잦지 않아 위안부와 군인들 사이에 인정이 싹틀 수 있었다”(『강제 2』, 173쪽)고. 위안부의 상황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 3. 피고인의 주장

#### (1)

이 부분은 자긍적협력자라고 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역할도 요구되고 있었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서술은, 그 앞의 인용한 부분(65면 3줄 - 9줄)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그 인용한 부분은 실제 <위안부의 증언>입니다. 모든 근거는 본서 안에 있습니다.

출정하는 군인에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한 말을 위안부 본인이 “위로해 주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위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65면 4줄 -5줄).

(2) 위안부가 군인에 대한 性的위안을 통한 신체적 위안을 요구 당했다는 것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더하여 군부는 단지 신체적인, 성적인 위안 뿐 아니라, 정신적인 위안의 효용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의식하여 위안부 숫자를 늘리려 한 자료도 존재합니다. 이에 응했는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또한 위안부가 일부군인에게 정신적 위안이 되기도 했다는 것은, 본서 내용 이하에 추가하는 증언, 즉 “군인이 위안부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부탁을 많이 했다”(66면 7줄), “손을 잡고 이뻐 죽겠다”, “저그마음 위로 할라구 오지”(68면 끝줄 - 69면 2줄)라는 증언에서도 그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적위안“은 <자궁적 협력자>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 역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애국적협력>을 강요당한 정황에 관해서는 앞서의 설명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번 9, 책 67쪽>

### 1. 검찰 기소 내용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흔적들을 그녀들 자신이 “다 내뺐”다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봐 리는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66면 첫줄 - 67면 18줄

이케다는 나를 불쌍케 여겨주고 참 귀여워해줬어. 몸두 마음대로 안 거스그하고 그냥 옆에서 가만 누웠다 가고. 좋은 사람도 있어.(『강제 3』, 228쪽)

거기에 내 애인이 있었어. 좋아하는 사람이. 일본 남자 소쫂야. 구마모도 시미즈라고 그래. 나는 그걸 몰랐었어. 근데 내가 막 인자 후큐슈 가니까 아 뱃머리에 나왔드라고. 배를 타고 막. 우리는 큰 배에 탔는데 뺏드를 타고 막 그때만 해도 “마보우, 마보우” 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허허 그때만 해도 반갑드라고 아주. 허허. “오도록 부탁을 많이 했다, 오라고 부탁을 많이 했다”고 그래. 현병한테로.(같은 책, 110쪽).

이렇게 말하는 위안부는, “자꾸 배신감이 들어”라면서도 “지금도 이 사람이 안 잊혀져”라고 말한다.

복숭아꽃 필 때 기헤이가 말 타는 병이거든. 우리를 이쁘다고 말 태와갖고 말을 쫓아버려. 그럼 난 말 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죽는다고 소리지르면 말이 더 놀라서 뛰네. 사진도 많이 박혔는데 한국 나오면서 다 내뺐어.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봐.

그 일본 사람도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도 흉을 잡을라면 한이 없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또 입었고. 지는 사람이 문제야. 이기는 사람이 문제지. 쫓고만 사람이 할 수 없었잖어. 우리가 졌으니까. 일본놈도 좋은 놈도 있고 하고 하잖어.(『강제 5』, 43쪽)

일본놈들이 그땐 막 별걸 다 갖다주는기라. 먹으라고. 근데 오는 거 보니 간즈메(통조림)랑 과일이랑 별거, 그땐 계란도 귀해서 계란도 가지고 와서 막 삶아주고, 먹고 일어나라고. 파인애플도 사주면 가지고 와서 막 따놓고 옆에 떠억 긴 칼 차고 저 구석에 앉아갖고 날 치다보고 앉아서 그걸 먹으라고 보네요. 그러믄 난 못 먹는다고 안 먹었어. (중략) 그랬더니 스기야마 군쵸가 날보고 시영딸로 하자고, 올라오더니 밥 먹어, 밥 먹으면 한국에 보내줄게. 내가 보내줄게 지발 밥 먹으라고. 어떤 때는 또 시금치죽, 계란죽, 그거를 좋은 죽이라고 또 끓여 올려 보내주네. (중략) 그때가 추어(추웠어). 막 벌벌 떨고 침대도 거기는 불 때는 데가 없어. 중국은 모포나 그런 거나 덮고 침대에 참 추워. 근데 거기서 인자 두르고 있으면 올라와서 추분강(추운가) 올라와 보고 또 가고. 나스면 내 꼭 보내 주꾸마 했어.(같은 책, 39~40쪽)

물론 이런 기억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기억일 수밖에 없다. 설사 보살핌을 받고 사랑하고 마음을 허한 존재가 있었다고 해도, 위안부들에게 위안소란 벗어나고 싶은 곳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런 식의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녀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흔적들을 “다 내뺐어”라는 점이다. “그거 놔두면 문제될까봐”라는 말은,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그녀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 이후 내내 그렇게 ‘기억’을 소거시키며 살아왔다.

### 3. 피고인의 주장

(1) 먼저, 피고인은 이 글에서 위안부가 “애국적”, “자긍적”, “협력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67면 16줄)도 그저 ‘일본군과 친하게 지낸 사실’일 뿐 위의 개념과는 관계없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동지적 관계”뿐입니다.

고소인/검찰의 지적은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쓰지 않은 말조차 썼다고 하는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저 “사랑과 평화가 가능했다”(67면 13줄)고 했을 뿐, 이는 애국이나 긍지나 협력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2)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 조선인은 제국일본의 일부가 된 상태였습니다.

(가) 피고인이 “동지적 관계”라 한 것은, ‘조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본인”으로 간주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중국이나 네덜란드 등 일본과 전쟁을 한 나라의 위안부와는 정황이 달랐음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나) “기본적으로는”이라는 단어는 ‘구조’ 즉 ‘그 안에서 협력을 했던 저항을 했던 조선인이 처한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즉 식민지화되어 일본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실제로 위안부가 “당신도 헤이타이상(군인), 헤이따이상, 나도 이리 산 것도 고향을 떠나서 이리 산 것도 천황을 위하여”라는 노래에서 나타나

는 것(79면 13줄 - 15줄)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제국의 일원,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와 있다는 외로움과 유대감을 느껴야 했던, “성과 생명을 국가에 동원당해야 했던”(79면 9줄 - 11줄 참조) 개인으로서의 유대감을 “동지적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소인/검찰이 이러한 부분조차 그저 애국/협력으로만 읽으려 하는 것은 이들의 유대감을 그저 일본/조선인으로서의 것으로만 파악해 부역자/협력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강한 선입견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국적이전에 성별아이덴티티가 존재하고 계급적아이덴티티가 존재한 다는 것을 무시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3) 그렇다고 해서 조선인/일본인, 남/녀간 차별이 없었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피고인은 “10명이 1000명을 상대해야 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들의 ‘위안소 생활’의 본질”(64면 12줄 - 13줄),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인 숫자의 군인을 감당해야했다는 점에서도 ‘위안부’가 ‘군인’과의 관계에서 희생자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79면 6줄- 8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 <순번 10, 책 99 쪽>

### 1. 검찰 기소 내용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 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 위안부가 일본군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97면 6줄 - 99면 10줄

그런데 동남아시아 쪽이 되면 상황은 더 극명하게 갈린다.

해방이 되자 위안부 여자들을 다 모아서 근처 수용소로 가 있었다. 그곳에는 작은 배를 타고 갔는데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인 것 같았다. (중략)

언젠가 귀국할 때를 대비하여 옷과 이불 같은 것을 많이 마련해두었으나 하나도 가져올 수 없었다. 당시에는 일본이 진 것이 기쁘기는커녕 아득하고 아찔할 뿐이었다. 내 청춘을 바쳐 그렇게 번 돈을 몽땅 쓰레기처럼 버리고 돌아와야 했던 것이다.(『강제 3』, 289쪽)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식당 보이러를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팔아주지도 않고 결국 돈을 못 받았어. 맨날 팔고 돈을 준다고 했는데. 배가 일본으로 나올 전날에 그 보이러값을 가지러 갔는데 쇠사슬을 휘두르면서 나를 협박하는 거야.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것이요. 그동안 압박을 받았으니까. 일본 군인들이 나를 보고 '네창 기치가이(아가씨 미쳤어?) 총 갖고 다니는 우리들도 그 사람들한테 못 가는데 돈이 뭐요?'라고 그랬어. (중략)

우리 여자가 한국에 나올 적에는 쉽게 나왔어. 부대에서 간호원처럼 있다 나온 게로 딴 사람들은 여러 달 걸렸지만. 일본 군인들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간 거요. 나도 그 배를 탔지.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도 못하고.(『강제 3』, 233쪽)

중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현지인들에게는 ‘적’의 관계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 중엔 스스로가 위안소를 경영하는 업자가 된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일본의 패전이란 우선 그동안의 자신의 위치와 재산을 잃는 일이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었어도 ‘간호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일본군과 함께 쉽게 빠져나온 경우도 있었다.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한 것은 일본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하자면 돈을 벌었던 경우에도 이들은 모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그건 그들이 일본의 점령지에 나가 있었던 결과로 일본과 함께 현지에서 쫓겨 달아나야 했던 ‘준일본인’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안부의 가난’은 업주들에게 노예 같은 착취를 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패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식민지나 점령지에 나가 있었던 일본인과 조선인 등 ‘일본 제국’의 구성원들은 갑작스러운 일본의 패전을 맞아 대부분 몸만 빠져나와야 했고, 돌아온 각각의 ‘조국’에서 오랫동안 차별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일본인, 대만인과 함께) ‘조선인 위안부’가 중국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위안부와도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제 생각하니 태국의 방콕이라고 기억나네. 거기서 몇 개월 있었어. 일본 군인과 군속이 인솔하여 방콕에서 걸어나와서 부둣가에 가 있으니까 일본 가는 배가 왔어. 쫄맨한 배 타고 나와가지구 거기서 또 큰 배에 옮겨탔어. 일본까지 타고 온 배 이름은 생각 안 나.

우리를 배에 싣고 요코하마로 왔어, 일본 사람이 데리고 왔어. 요코하마 와서도 미군을 봤지. 시코쿠 전쟁범인들만 집어넣는 데로 왔어. 한국 여자는 나하고 셋이 왔어. 그 외엔 전부 일본 사람들이야. 거기 오니까 한국 여자들이 붙들려서 많이 와 있대. (중략) 해방된 다음해 초에 (한국에) 왔어. (중략)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일본에서 부산까지 타고 온 배가 미국배야. (중략) 내가 나올 때 여자들이 한 30명 나왔어.(『강제 3』, 313쪽)

버마의 양곤(랑군)에 있다가 전쟁 막바지에 폭격을 피해 태국으로 피신

했던 이 위안부 역시 일본군의 안내로 일본까지 왔다가 귀국한 경우다. 이들이 '전쟁범인', 즉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설사 그들이 가혹한 성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라고 해도 '제국의 일원'이었던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 서술은 “자궁”이나 “애국”과는 상관없는 대목입니다.

(2)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라는 기술만으로 “자궁/애국적 협력자”라고 말한다면 일제시대때 징병/징용당한 이들도 그랬다고 해야 합니다. 지극히 거친 독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위안부들이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정황’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운명”(99면 10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시각을 보여 줍니다. 비방이긴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국의 일원”이 되어버린 정황’, ‘그에 따라 협력을 강요당한 정황’에 대한 깊은 슬픔을 드러내는 부분인 것입니다.

(3) 특히 이 부분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 비교적 건조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이들의 정황이 강요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일본을 향하여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오독이므로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순번 11, 책 112 쪽>

### 1. 검찰 기소 내용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111면 15줄 - 113면 5줄

하지만 ‘조선인 여성’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반도’ 출신 ‘일본’ 여성—‘제국 치하 국민’의 자격으로 군인에 대한 성의 제공을 요구당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상황은, 일찍이 메이지明治 시대부터 해외로 돈벌이를 나가야 했던 일본인 여성을 대체한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조선 여성’이 많았던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선은 ‘조선’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여성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현지 여성보다 ‘조선’ 여성들이 인기가 많았다면 그녀들이 ‘준일본인’일 뿐 아니라 외모에서까지 ‘일본 여성’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외는 있었겠지만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그녀들이 일본 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갖고 일본군을 상대했다는 사실은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인 위안부’를 대체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조선 여성의 임금은 일본 여성의 뒤를 이었고, 중국 여성은 그 다음이었다(『해남도로 연행된 조선인 성노예에 대한 진상조사』). 정대협은 그런 ‘차이’, 다른 지역 여성들과의 근본적 차이를 배제하고 똑같은 피해자로만 설명한다.

‘정신대’는 가난하지 않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여성들도 대상이 되었지만, ‘위안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가난한 여성이었다. 성이나 장거나 피 등 신체를 파는 일은 대개는 다른 경제문화자본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선택된다.

무엇보다, 성노동의 가해자는, 여성을 ‘교육’에서 배제시켜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아버지나 오빠가 물건처럼 팔 수도 있었던 시대, 여성의 소유권을 남성이 가졌던 시대의 가부장제적 국가였다(『회해를 위해서』). 따라서, ‘조선인’이 처음부터 타깃이 될 이유도 없었다.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가능한 문화자본을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구조 속의 일이다. 그녀들 중에는 오빠의 학비를 대기 위해 공장에 가는 여공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조선의 미혼여성’이 ‘일본군 위안부’의 타깃이었던 것처럼 말하는 정대협이 설명은 ‘조선인 위안부’ 여성이 많았던 것이 식민지의 빈곤과 인신매매조직의 활성화 등 전체 사회구조의 결과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홈페이지는 다시,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과 “현지에 버려지거나 자결을 강요당하거나, 학살당하였다”는 설명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위안부들은 폭격으로 사망한 이들이 오히려 소수이고 대부분은 귀국했거나 현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중에 일본군의 도움으로 귀국한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도 정대협이 설명은 말하지 않는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피고인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매춘’이란 어디까지나 ‘이들이 종용당한 정황의 하나’일 뿐입니다.

(2) 피고인은 위 문장의 앞부분에 “무엇보다도, 성노동의 가해자는, 여성을 ‘교육’에서 배제시켜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아버지나 오빠가 물건처럼 팔 수도 있었던 시대, 여성의 소유권을 남성이 가졌던 시대의 가부장제적 국가였다”(112면 12줄-15줄)고 기술하여, “성노동의 가해자는 가부장제적 국가”이고, 처음부터 조선인이 타국이 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부장제” 사회하에서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결과로 조선인 여성들이 동원대상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음은 명백합니다.

조선인 위안부 문제가 “식민지의 빈곤”에 따른 것임을 지적해 ‘조선을 통치한 일본의 책임’을 묻고, “인신매매조직의 활성화”를 지적해 ‘조선의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3) 본서의 다른 곳에서, 피고인은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위안부’를 필요시하고 위안부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 ‘관리’를 했던 건 분명하다. 그러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남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 ‘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120면 10줄-13줄).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한반도를 점령했던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떤 통치를 행했으며, 그 통치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의 피해가 존재했는지’를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쓴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항목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순번 12, 책 120쪽>

### 1. 검찰 기소 내용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119면 5줄-121면 11줄

식민지였기에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가 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면서 일본군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집된 존재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식민지가 되는 순간 안을 수밖에 없는 모순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식민지의 그런 복잡한 측면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 자신을 완전한 피해자로 상상하도록 만든다. 결국 우리는 언제까지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없게 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왜 그들이 그랬는지까지를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식민지가 된 우리 자신을 언제까지고 용서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건 식민지화되면서 시작된 우리의 협력-자의 건 타의건-을 타자화하고, 그로 인해 생긴 분열을 치유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언제까지고 일본에 의해 야기된 '분열된 민족'의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한 우리에게 '일본의 식민지배'가 만든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불화는 증오심을 키우고, 증오심은 다시 적대와 불화를 만든다. 2000년

대 들어 험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010년대 이후에 '위안부'상과 박물관에 말뚝을 박는 식으로 노골적인 적대를 표명하는 일본인이 나오게 된 것은 그런 20년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그런 일본인이 나오게 된 원인을 단순히 일본 탓으로만 돌리는 한 사태는 더 악화될 뿐이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위안부'를 필요시하고 위안부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 '관리'를 했던 건 분명하다. 그런 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남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 '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이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이 위안부에 관한 기억 중 '그들만의' 기억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제 연행'이나 '20만 명이라는 숫자'를 문제삼고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둘러싼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은 앞에서 본 대로다.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위안'이란 기본적으로는 그 두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이 20년 동안, 우리는 초기에 만들어진 '상식'에만 고집하고 그에 반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우익의 망동'이거나 '친일적 발언'으로 간주하고 배척해왔다. 그 결과,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배양'된 '위안부 이야기'뿐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켜온 것은, '피해구조'에 자칫 균열이 가해지는 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피해구조'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에 대한 반발도 커질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처음부터 인권이나 아시아의 평화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는 이들의 가담과 주장이 섞이면서 타당한 비판조차도 들려오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이어지게 되고, 그런 한 해결은 오지 않는다. 운동의 지속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을 지향한다면 이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은 ‘지원단체’와 ‘일본의 우익을 비롯한 위안부 문제 부정자들’이 서로 과장 혹은 왜곡된 정보에 의존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해온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그들의 설명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 2부 5장에서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 부정자들이 위안부를 그저 ‘매춘부’로만 바라보는 데 대한 비판을 살피게 되지만, 이 부분이 포함된 1장에서는 일단은 ‘그저 “갑자기 강제로 끌려간 소녀”가 일반적이었던 것처럼, 한국 사회를 향해 말해온 정대협’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대협의 홈페이지와 전시관의 설명에 대해 검토한 부분인 것입니다.

(2) 피고인의 문제의식은, ‘정대협식의 “하나의 단답”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그저 분노를 키우는 일에 귀결”되고,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는 일”이 “적대감과 피해의식을 만드는 일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114면 1줄 - 9줄 참조).

그 때문에 ‘그저 “위안부 할머니들이 연행되었다”고만 기술(114면 23줄 - 115면 3줄)하는 정대협’을 비판하며, “진짜문제는 그런 상황이 또 다른 기억을 갖는 일본인들의 반발과 부정을 부르고 한국과 지원단체들은 다시 그들을 비난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20년 이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면서(115면 4줄-7줄), 이러한 상황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3) 피고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위안부가 성노예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116면 10줄- 11줄), “조선인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의 국가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117면 7줄-10줄)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그런 구조를 만든 국가에 가담해 가난한 소녀들이 더 많은 숫자의 군인을 상대하도록 종용한 것은 군인뿐 아니라 업자였다”(116면 19줄-21줄), “정대협이 정착시킨 성노예라는 단어가 비난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일본 군인 뿐이다”(116면 끝줄 - 117면 1줄), “무엇보다도 성노예란 성적인 흑사 이외의 경험과 기억을 억압하고 은폐하는 말이다”(117면 15줄-16줄)라고 지적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복잡한 구조를 함께 살펴보려 했던 것입니다.

(4) 그리고 피고인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이 강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위안부에 관한 기억 중 ‘그들만의 기억’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120면 14줄-15줄), 지원단체가 말해온 “20만”, “강제연행”에 관한 이야기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입니다(120면 15줄- 18줄). 그저 매춘이라고 말하는 부정자들의 생각도 문제가 있지만(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피고인은 이 책 5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지원단체의 이해도 충분한 것은 아니며, 위안부가 처한 정황은 그 양쪽을 다 봐야만 충분히 이해가능하다고 말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5) 그리고 이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피고인은, “이 20년 동안, 우리는 초기에 만들어진 상식에만 고집하고 그에 반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우

익의 망동'이거나 '친일적 발언'으로 간주하고 배척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은 모두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 배양'된 '위안부 이야기'뿐이다”(120면 끝줄 - 121면 3줄), “‘피해구조’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에 대한 반발도 커질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처음부터 인권이나 아시아의 평화와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는 이들의 가담과 주장이 섞이면 타당한 비판조차도 들려오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비판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이어지게 되고, 그런 한 해결은 오지 않는다. 운동의 지속이 아니라 이문제의 해결을 지향한다면 이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121면 5줄-11줄)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6) 여기서도 피고인은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춘적 강간”이라는 표현은 위안소에서의 일이 관리매춘의 형태를 띠었으나 실제로는 윤간이자 상징적인 “강간”임에 다름없음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나란히 한일 양쪽을 향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했다는 검찰의 앞서와 마찬가지로 곡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항목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순번 13, 책 130쪽>

### 1. 검찰 기소 내용

아편은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은 ‘주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129면 7줄- 131면 3줄

특히 아편에 관한 이야기에서, 원래의 증언은 아편을 놓은 이가 군인이 아니라 ‘주인’이었다고 말하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군인이 주사를 놓은 것처럼 그려진다. 그렇게 되다 보니 ‘주인’의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증언에서도 ‘주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때 한 번뿐이다).

“가서 얼마 안 돼서 남자들 상대 안 할려구 내가 발악하구 하니...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받았는데 피가 죽죽 나구 목간도 못 갔어. 나 살려달라고 그러니깐 나 살려준다면서 그때부터 아편을 놓아주는 기라. 그게 아편인 기라. 그 뒤 아편을 맞고 나면 아픈 데도 모르는 기라, 상대를 해도. 그래 가지고 고만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다섯 대씩 아편을 맞았다.

“기분 좋은 거는 모르고 아프지가 않아. 처음에는 하루에 한 대 맞구, 나중 가서는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깐 두 대 맞고 일요일, 토요일 날은 다섯 대 맞구.

“매일 놔줬다. 인자 주인[이] 놔줘.

“모르지. 아편주사라는 걸. 내가 중독이 될 때 알았지. 하루 한 번 주던 게, 아침에 주고 저녁에 주고 그러고 이제 주사를 안 주면 아이고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게 바로 중독 초기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 역사관 홈페이지)

그러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들은 일본군이 아편까지 놓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아편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위안부들의 증언에서도 많이 보인다.

아편을 하는 여자도 있었다. 나이 먹고 몸이 힘들고 속상하니까. 중국 사람 중에는 아편 하는 사람이 많았다. 아편을 팔에 혈관에 맞기도 하고 빨아먹기도 했다. 몰래 중국집에 가서 하는 것이다. 아편은 싼다. 아편을 빨고 오면 안 아프다고 했다. 아편 기운이 떨어지면 죽어간다. (중략) 그런 언니들이 나중에 돈도 떨어지고 주사를 더 꽂을 데가 없으면 살이 굳어지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강제 2』, 157~158쪽)

또 아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중략) 중국인, 조선인 장사들이 몰래 와서 파는데 나도 한번 찌러보니 세상이 내 세상이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중략) 함께 있던 여자들도 몰래 아편을 많이 했어요. 군인들이 찌러줬어요. 들키면 큰 일나지. 군인은 아편을 못 찌르게 돼 있었거든. 군인들이 몰래몰래 찌러줬는데, 같이 아편을 찌르고 그걸 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여자도 찌러주고 자기들도 찌르고, 그렇게 했어요. (『강제 3』, 133~134쪽)

아편은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은 ‘주인’이나 상인들을 통한 직접사용이었다.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편이 본래 좋은 기분을 만들거나 고통을 잊기 위해 쓰는 것인데도, <소녀 이야기>의 아편 이야기는 그런 문맥을 완전히 소거하고 그저 ‘일본군의 악행’의 증거로만 이야기된다. 물론 이 위안부가 해방 후에 ‘밀수’로 생활을 했다는 것도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야기되지 않는다. ‘육성’을 토대로 해 ‘진실’성이 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이런 식의 각색을 거친 이야기는 ‘위안부의 온전한 삶’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은, 위안부들이 아편을 사용했다고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언이 스토리로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관련 부분이 원래의 이야기와 달라졌음'을 보기 위한 부분입니다. '애니메이션이 군인의 아편사용을 무서운 군인에 의한 강압으로 묘사하는 것'이 '실제 증언'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되어 '일본군의 악행'을 강조하고 마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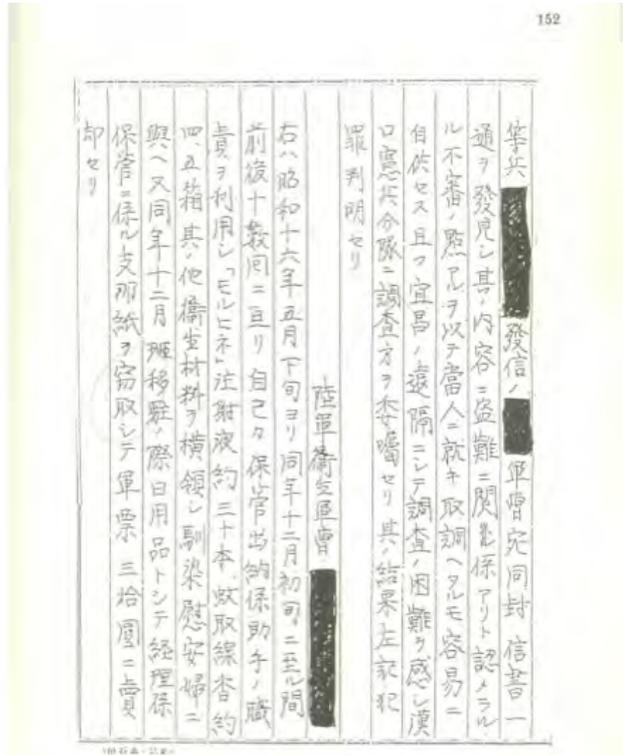
<소녀이야기>라는 작품이 <소녀>이미지를 강화시키고 널리 향유된 작품이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증언에서 아편을 놓은 것은 '주인'이었던 것이 '군인'으로 바뀌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책 129면 11줄-끝줄의 증언에 따르면, 업자가 위안부에게 아편을 놓아준 건 군인들을 상대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위안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업자 자신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쾌락이라기보다는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나도 한번 찢어보니 세상이 내세상이여.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130면 11줄- 12줄), "군인들이 몰래몰래 찢어줬는데 같이 아편을 찢르고 그걸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여자도 찢어주고 자기들도 찢르고, 그렇게 했어요"(130면 13줄-15줄)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쾌락을 목적으로 한 사용도 있었음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위 글을 서술한 것입니다.

또 그러한 위안부의 필요에 맞춰, 군부대약품으로서의 아편을 훔쳐서 갖다 주었다가 영창에 들어간 군인도 있습니다.(종군위안부관계자료집 2권 122면 참조)



(번역: 십수회에 걸쳐 자기가 보관출납계조수직책을 이용해 모르핀 주사액 약 30개, 모기향 약 4,5상자 그 외 위생용품을 횡령해 알고 지내던 위안부한테 주었고)

(2) 이 서술 부분은 ‘위안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창작자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으로서, 맥락상으로도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라는 지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런 식의 각색을 거친 이야기는 위안부의 온전한 삶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뿐이다”(131면 2줄-3줄)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아편관련 사항을 서술하였을 뿐입니다.

## <순번 14, 책 137쪽>

### 1. 검찰 기소 내용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같은 제국 일본 의 여성으로서 군인들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137면 3줄 - 9줄 참조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같은 ‘제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성의 제공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남성과 국가의 여성착취를 은폐하는 수사에 불과했지만, ‘일본’ 군인만을 위안부의 가해자로 특수화하는 일은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은 ‘일본의 지원단체’를 향해 ‘그들의 이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처지는 노예적”(135면 9줄-12줄)이지만, “위안부의 자유를 억압한 주체는 일본이나 군만이 아니라 업주와 포주들임”(135면 13줄-136면 3줄)을 말했습니다.

(2) 피고인은 위안부가 애국. 동지. 협력의 틀 안에 존재했음을 지적하지만, “그녀들에게 부여된 공적인 역할(137면 5줄-6줄)이 애국의 의미를 지닌 것”이 “기본적으로는(137면 6줄)” 그랬다는 것을 부연함으로써, 어디까지나 ‘형태’를 지적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고소인측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춘이나 애국’은 피고인에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저 ‘그러한 구조에 편입되어 있었음’을 말하려 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것(애국 등의 틀)은, 남성과 국가의 여성 착취를 은폐하는 수사에 불과”했다(137면 7줄-8줄)고 씀으로써, 피고인은 ‘애국’이라는 것이 ‘개인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레트릭’에 불과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일본인에 의한 식민지인의 이용과 차별의 교묘한 구조”를 지적합니다(137면 23줄-138면 1줄).

이러한 지적이 ‘지원자들의 일면적인 이해가 자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그 다음부분을 보면 명백합니다.

“(일본인들의) 감추어진 차별의식을 보기 위해서도 ‘조선인 위안부’라는 존재의 다면성은 오히려 직시되어야 했다”(138면 14줄 -15줄)고, 위안부를 위해 애써온 지원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안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들의 내면에 존재했던 차별의식을 지적하기 위해서도 ‘동지적 관계’는 우선 인정될 필요가 있다” (138면 19줄 -21줄)라고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피고인이 왜 “동지적 관계”를 지적했는지 그 이유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3) 그럼에도 고소인과 검찰은 피고인의 기술이 동지적 관계를 부정적인 의미로 오독하고 있습니다.

본서에는 위안부를 비판(비난)한 기술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구조 속에 놓이게 된 위안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일본의 책임’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소인이나 검찰이 매춘이나 애국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위안부는 그런 구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시킨 일’입니다. 그런 한, 위안부 당사자들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위안부들이 국가의 정책에 의해 모집된 존재였으며, 전시에 간호부로 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추가 자료를 별도 제출합니다.

## <순번 15, 책 144쪽>

### 1. 검찰 기소 내용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선씨'라는 말에서는 조선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 이었기 때문이다

→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143면 14줄 - 145면 13줄)

작가 다무라 다이지로의 소설들은 일본군의 그런 의식을 잘 보여준다. 다무라는 1940년에 징집되어 중국 북부지방에서 병사로서 전쟁을 경험했는데, 중일전쟁기의 전쟁터를 무대로 한 「메뚜기」(1964)는 그때의 경험을 녹여낸 소설 가운데 하나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하라다 중사는 부하들과 함께 전사자들의 유골을 넣을 나무상자를 주둔지의 상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전선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런데 '다섯 명의 여자들을 주둔지에서 그곳까지 데리고 가는 것도 그의 또 다른 임무'였다. '위안부'들 이외에 '조선인 업자'도 있었는데, '중사'가 업자와 함께 위안부의 이송을 담당하는 것이다. '위안부'와 업자의 이동이 이들의 '임무'였다는 것은 군이 적극적으로 '위안부'를 필요로 했고 그 관리에 나섰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열차로 이동 중이었던 그들은 도중에 다른 부대와 만나게 되고, 그 부대장은 여자들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

“이봐, 나오라고 하잖아, 안 나올 거야조선씨.”(중략)

“당신이 인솔자인가? 조선씨들을 당장 하차시켜라. 나는 이곳 고사포부대장이야. 내려라.”(중략)

“이들이 이시이부대 전용 여자들입니다.”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 마라. 어차피 닳는 것도 아닌데 찌찌하게 왜 그러냐. 신징(창춘의 만주국 시절 이름-인용자)에서는 신나게 인심썼다던데, 왜 우리 부대는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하지만이고 뭐고, 안 된다면 통과시켜줄 수 없지. 이 앞으로 절대 못 간다. 알겠냐? 통행세라고. 기분 좋게 내고 가지 그래.”

이곳에 도착하기 전, 카이평을 출발하고 얼마 안 지난 시점에 신징과 다른 한 곳에서 그녀들은 이미 두 번이나 차에서 끌어내려졌었다. 그때마다 그 지점에 주둔 중이었던 병사들이 쉴 새 없이 차례로 그녀들 다섯 사람에게 덤벼들었다.(479~81쪽)

이 상황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강간’이다. 또 이들이 ‘이시이 부대 전용 여자들’이라는 말은 ‘위안부’들이 ‘부대’마다 할당되어 있었고 병사들이 ‘전용’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군복이나 무기 같은 군수품이었다.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센삐’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닳는 것도 아닌데’라든지 ‘찌찌하게 왜 그러냐’라는 표현은 이 군인들에게 조선인 ‘위안부’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한 사람의 ‘창녀’조차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인 위안부’란 전용권을 가진 부대가 다른 부대 소속 군인들에게 ‘신나게 인심씨’도 되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매춘부에게는 허용되기도 했던 자신의 신체의 관리권을 그녀들은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그저 ‘통행세’로 간주되는 사용가치일뿐 주체적인 의지를 가진 상품조차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강간당하고 돌아온 그녀들은 이렇게 말한다.

“제기랄. 누굴 병신으로 아냐. 그 자식들, 했으면 돈을 내야 할 거 아냐. 돈도 안 내고 뭐 하는 짓이야.” (중략)

“멍청하긴. 작전 중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며 병사들은 당연한 요구를 비웃었다. (488~89쪽)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은 ‘위안부를 단순한 매춘부로 간주하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일본인의 부정의 심리와 식민지 인식”(142면 2줄)

그래서 “부인하는 이들 역시 ‘위안부란 매춘부’라는 하나의 상만 고집해 왔다”(142면 11줄-13줄)고 지적하면서 글을 시작한 것입니다.

(2) “그 동안 위안부 문제를 두고 대립해 온 이들이 각기 보고 싶은 내용에만 주목하면서 그것만을 위안부의 ‘진실’로 생각해 온 셈”(142면 13줄-14줄)이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문제의식을 명확히 보여 줍니다. 이 책의 부제목인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이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자발적인 매춘부”로만 생각한 이들에 대해 “자발성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했고, 매춘부라는 외견 속에 ‘성노예’라는 측면이 존재했다”(143면 3줄 -5줄)고 명확히 쓰면서 비판을 시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보수가 주어졌건 아니건 ‘위안부’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운간이 국가에 의해 허용된 존재”이고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 의식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의식이었음”(143면 10줄-13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3) “창녀”라는 표현은, ‘군인들이 위안부들을 그저 “빠”(여성 성기를 의미하는 중국속어로서, 창녀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로 부른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인용했을 뿐입니다. 위안부를 창녀로 표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소설 속 군인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검찰의 지적은 오독입니다. 인용부호(145면 첫줄의 ‘창녀’라는 표현의 인용부호)가 있는 것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적부분에서 피고인은 “조센삐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144면 21 줄-22 줄)고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매춘부에 대한 차별 의식’ 이상으로 ‘조선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있었음을 간파해 내고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일본군에게 조선인위안부가 물건 취급당하는 정황을 제시하면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차별과 경멸과 강간을 비판했던 것입니다.(145면 4 줄-6 줄) 말하자면 위안부들이 비싼 요금을 받았다면서 그저 매춘부라고 말하는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을 한 것입니다.

(4)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을 향해 “그 착취의 주체가 설령 포주들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착취구조를 묵인하고 허용한(간혹 그 구조를 바로 잡으려고 한 군인도 있었지만 그건 예외적인 일로 보아야 한다) 군의 상부에 책임이 없을 수 없다”(146면 2 줄-4 줄)고 강조한 것입니다.

(5) 피고인은 일본을 향해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비판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여성 경시 경시뿐만

아니라 민족 경시가 그 들에게 강간을 허용한 것이다”(147면 11 줄-12 줄)라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전쟁터의 ‘위안부’들이 ‘원래부터 매춘부’였는지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지 않다”(148면 13-14 줄)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했다”는 지적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순번 16, 책 158쪽>

### 1. 검찰 기소 내용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158면 3줄 - 159면 16줄)

‘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전쟁터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인다. 위에서 인용했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인도네시아의 “암본 섬에서 강제연행 강제사역이 존재했음은 분명하다”(「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의 ‘사실’광고를 비평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강제성은 조선인 여성과는 다른 경우로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유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든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기무라 사이조)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분명 그녀들 중에는 가난 속에서 ‘흰 쌀밥’을 꿈꾸거나 여자가 공부하는 일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던 가부장사회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가 되고자 한 이들도 많았다. 그런 이들을 ‘자발적’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설사 ‘자발적’으로 ‘희망’했다 하더라도 그녀들로 하여금 세 상에서 ‘추업’이라고 불리던 일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은 그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구조였다. 그녀들은 그저 가난하거나 식민지의 여자거나 가부장제 속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립 가능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문화자본)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일-직업’이란 집 바깥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장소’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을 제공하는 직업은 설사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해도 사회적·심리적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다. 그런 ‘추업’에 그녀들이 ‘자발적’으로 향했다면 무엇이 그런 표면적인 ‘자발성’을 이끌어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남성이고 군대이고 국가였다. 그리고 ‘일본 제국’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부’란 어디까지나 국가와 남성, 그리고 격리된 남성 집단을 만드는 전쟁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생긴 존재다. 위안부의 자발성이란, 본인이 의식하지 않는다 해도, 국가와 남성과 가부장제의 차별(선별)이 만든 자발성일 뿐이다. 그리고 그녀들은 폭탄이 터지는 최전방에서도 폭력에 시달리며 병사들의 욕구를 받아주어야 했다

“전쟁이 난 후 갱이를 들고 우리가 보국구덩이를 팠다. 섬을 돌아다니면서 공습을 피했는데 그런 때 양은철과 임창수가 나를 들것에 업고 다니기도 했다. 나는 몸이 회복된 다음에 폭발탄을 날라주기도 했다. 피난 중에도 나무판을 가져다가 칸만 질러놓고 가려놓으면 물을 떠놓은 대야에 밀을 씻을 여가도 없이 달려들었다. 바나나, 야자, 사사포 나무 등 과일마누마다에 밀에 커튼을 치고 군인을 받았다. 술 먹고 달려드는 군인을 내가 밀이 붓고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서 밀려냈더니 칼로 어깨를 쳤다. 어떤 때는 총대로 얼굴을 때렸다. 거기다 걸음도 못 걸으면서 피물은 봉대 등의 빨래도 해야 했다.(『강제2』, 60쪽)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기술한 앞 뒤 내용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 우익 등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일부 인정하면서 비판한 것입니다.

(2) 따라서 “매춘”을 사실로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의미로 “매춘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위안부에 대한 경멸과 책임회피를 비판한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아래 단락에서 피고인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부장적 공동체를 벗어나려 했던 이들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158면 11줄 - 14줄)고 “일단”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즉 “<하지만> 설사 '자발적'으로 '희망'했다 하더라도, 그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추업醜業'이라고 불리던 일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은 그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구조였다.”(158면 15줄 -17줄)고 반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런 표면적인 자발성을 이끌어 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158면 끝줄 - 159면 첫줄)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국가와 남성과 가부장제의 차별(선별)이 만든 자발성일 뿐이다”(159면

5줄 -6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그녀들은 폭탄이 터지는 최전 방에서도 폭력에 시달리며 병사들의 욕구를 받아주어야 했다”(159면 6줄 -7 줄)고 서술하여 위안부의 참혹성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문장 역시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말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부분 역시 검찰의 기소는 곡해와 오독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지적의 대부분이 곡해와 거친 오독으로 채워져있는 것은, 처음에 이 분석을 맡았다는 학생들과 나눔의 집 고문변호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춘관련 기술을 무조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적으로 쓰인 것으로 오독한 것이거나 악의적으로 읽은 결과일 것입니다.

## <순번 17, 책 160쪽>

### 1. 검찰 기소 내용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 (『화해를 위해서』).

→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159면 17줄 - 161면 7줄

'위안부'들이 병사들에게 "단체로 다가가 자신을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교를 부렸"다거나 "참으로 밝고 즐거워보여"서 "성적 노예에 해당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오노다 히로오)라는 발언을 들면서 그녀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분명 그녀들 중에는 '자신을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교를 부렸'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또 그런 그들이 '밝게' 행동하고 '즐거워'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포주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자신의 의지로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위안부들이(물론 그중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돌아간 이들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도착했을 때의 당혹감과 슬픔과 분노를 지우고 '자신을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 적극성은 포기과 체념, 혹은 그저 살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한 트릭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교를 부리는' 일이 비참성과 배치되는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에게 부여된 역할이었던 '위안'에 충실하려 했다 해도 그것이 '위안부의 고통'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화해

를 위해서』). 설사 “동정을 이끌어내서 돈을 가로채 자기 이익 챙기는 여자”(오노다 히로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많지 않은 돈을 다 써 버리고 후회한 병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녀들을 일본이 식민지배 구조 속에서 병사들을 ‘위안’하기 위해 동원한 이상 그녀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로 ‘애국처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그녀들을 그렇게 만든 일본으로서는 오히려 감사해야 마땅한 일이다.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금지-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내지는 물론 조선·대만에서 전쟁터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같은 글)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 국가가 그런 ‘애국’을 식민지인들에게까지 내면화시킨 결과일 뿐이다.

같은 위안부들 중에서도 산속이나 섬 같은 오지에까지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 이동한 것은 대부분 식민지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만든 것이 구조적인 것인지 개인적인 선택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일본군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의 ‘애국자’라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물론 그 작업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기억되어야 한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은 ‘위안부가 적극적으로 애교를 부렸다면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 ‘그들에게 그렇게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한 대목입니다.

(2) 애교는 그저 포기, 체념, 트릭일 수 있으므로 “애교를 부리는 일’ 이 비참성과 배치되는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에게 부여된 역할이었던 ‘위안’에 충실하려 했다 해도 그것이 ‘위안부의 고통’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160면 6줄 - 9줄)라며 그들의 생각을 비판한 것입니다.

지적된 대목은 위 글에 이어지는 글로서, “병사를 위안하는 애국처녀”란, 일본인들이 만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본 제국에 의해 식민지가 된 탓에, <애국 처녀>의 역할을 강제로 부여받게 된 것’이라는 ‘일본 비판’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 글에 이어 “그녀들을 일본이 식민지배 구조 속에서 병사들을 ‘위안’하기 위해 동원한 이상 그녀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160면 14줄 -15줄)고 말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부분을 그저 ‘피고인이 위안부를 애국적 협력자였다고 비난한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독해 결과입니다.

그것은 피고인이 “그것은 일본 국가가 그런 ‘애국’을 식민지인들에게 까지 내면화시킨 결과였을 뿐이다”(160면 23줄 -24줄)라고 쓴 부분을 간과, 무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국을 종용당하는 상황’에서 아직 어리거나 하는 이유로 설사 실제로 긍지를 느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든 일본인에게 오히려 책임이 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입니다.

(4) 따라서 이 부분 서술을 선입견을 배제하고 제대로 읽으면, 이 부분이 결코 그저 “애국적 협력자였음을 표현” 한 대목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함

니다.

“그녀들의 적극성과 주체성을 말하는 일이 ‘위안부는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162면 2줄-3줄), “그런 그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말은 때로 그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하게 다룬 데에 대한 사죄의 표현이어야 한다”(162면 19줄 -20줄)는 피고인의 서술(주장) 내용을 보면, 검찰이 이 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일본의 통치 체제하라는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웃음이나 애교를 만든 것은 ‘자살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과 식민지화된 나라의 슬픔’이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 <순번 18, 책 160쪽>

### 1. 검찰 기소 내용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금지 - 자기 존재의 의의(승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 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159면 17줄 - 161면 7줄

‘위안부’들이 병사들에게 “단체로 다가가 자신을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교를 부렸”다거나 “참으로 밝고 즐거워보여”서 “성적 노예에 해당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다”(오노다 히로오)라는 발언을 들면서 그녀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분명 그녀들 중에는 ‘자신을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교를 부렸’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또 그런 그들이 ‘밝게’ 행동하고 ‘즐거워’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포주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자신의 의지로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위안부들이(물론 그중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돌아간 이들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도착했을 때의 당혹감과 슬픔과 분노를 지우고 ‘자신을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 적극성은 포기과 체념, 혹은 그저 살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한 트릭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교를 부리는’ 일이 비참성과 배치되는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에게 부여된 역할이었던 ‘위안’에 충실하려 했다 해도 그것이 ‘위안부의 고통’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들의 '미소'는 매춘부로서의 미소가 아니라 병사를 '위안'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애국처녀'로서의 미소로 보아야 한다(『화해를 위해서』). 설사 “동정을 이끌어내서 돈을 가로채 자기 이익 챙기는 여자”(오노다 히로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많지 않은 돈을 다 써 버리고 후회한 병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녀들을 일본이 식민지배 구조 속에서 병사들을 '위안'하기 위해 동원한 이상 그녀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로 '애국처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그녀들을 그렇게 만든 일본으로서는 오히려 감사해야 마땅한 일이다.

식민지인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민간인' '여자'로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금지-자기 존재의 의의, 승인-는 “국가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있다”(기무라 사이조)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애국심뿐이었을 수 있다. “내지는 물론 조선·대만에서 전쟁터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같은 글)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 국가가 그런 '애국'을 식민지인들에게까지 내면화시킨 결과일 뿐이다.

같은 위안부들 중에서도 산속이나 섬 같은 오지에까지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 이동한 것은 대부분 식민지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만든 것이 구조적인 것인지 개인적인 선택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일본군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의 '애국자'라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물론 그 작업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기억되어야 한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도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였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것은 일본 국가가 그런 '애국'을 식민지인들에게까지 내면화시킨 결과였을 뿐이다”(160면 23줄-24줄)라고 일본을 비

판하고 있습니다.

(2)그러나 여기서는 위안부들이 '애국구도에서 활동한 경우'에 관한 자료를 일부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 162면 4줄-13줄의 증언(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권 177면)에는, 일본군의 묘지를 돌보는 위안부가 나옵니다. 또 앞서 제시한 빨래, 환영/환송회, 창씨르기, 소방대훈련등이 애국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따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 <순번 19, 책 190쪽>

### 1. 검찰 기소 내용

한 개인으로서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189면 12줄 - 191면 끝줄

무엇보다, 설사 모든 위안부와 지원단체가 기금을 부정한다고 해도, 그 부정이 앞에서 본 오해에 연유한 것이었다면,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다시 합리적으로 풀 방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위안부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이상, 해결 방식에서도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로 남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그 방도가 당사자의 의사를 부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받고 그들이 납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원단체와 위안부의 '해결운동'이 길어지면서, 또 운동이 대외적으로 성공하면서, 수요시위를 비롯한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은 어느새 해결 자체보다도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한국의 힘'을 확인하는 싸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운동'을 20년 동안이나 계속하면서 병 들고 나이든 위안부들에게 '한국의 자존심'을 대표하게 하는 것은 과연

‘당사자’의 뜻을 존중한 일이었을까. 그녀들을 노구에 채찍질하며 길거리에 나서는 ‘투사’로 만든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미 한 번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올바른’ 민족의 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민족’의 억압이 아니었을까.

한 개인으로서의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의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의 그런 욕망은, 일본 군인에 대한 사랑도, 자신을 판 부모나 조선인 업자나 ‘주인’에 대한 미움도, 그리고 해방 후에도 50년 동안 이어진 차가운 ‘한국인’의 시선도 있고, 소거시킬 수밖에 없다. 오로지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원한만을 되살리기를 그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20여 년간 이어진 ‘위안부 문제’란, 지원단체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그런 욕망과 기대가 우선시되면서 ‘당사자’들의 ‘지금, 이곳’에서의 고통은 잊혀진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기금의 수령 여부를 둘러싸고 당사자들은 심각한 분열과 후유증을 겪었고, 건강을 해친 한 할머니는 본인이 다른 이에게 수령을 거부하도록 강하게 촉구한 일이 건강 악화의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하나후사 에미코花房惠美子). 그것은 분명 국가의 또 다른 억압이었다.

기금을 반대했던 이들은 위안부 안의 분열과 지원자와 위안부의 분열이 ‘기금’ 탓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금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기에 하는 말이다. 실제로는, 기금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기금을 만든 정부에 대한 지원자들의 이해 부족이 위안부들을 분열시켰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겪은 강간이나 가혹한 노동의 원인은 식민지배와 국가와 남성중심주의와 근대자본주의가 빚은 가난과 차별에 있다. 나아가 그들을 그런 장소로 내몬 가부장제에 있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이용한 것은 ‘일본군’이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그런 시스템을 묵인한 국가에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은 이상(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개인이 거의 세상을 떠났거나 찾기 어려워진 이상 ‘범죄’로서 책임을 물을 대상은 이미 없다고 해야 한다. 대신, 구조적 강제성을 만든 책임 주체로서, 일본 국가가 그런 개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위안부들의 불행을 만든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의무적인 배상으로 질 수 있다면, 죄에 대해, 의무가 아니라도 책임을 지는 일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 90년대의 일본의 사죄와 보상이었다. 그러나 90년대의 보상은 그렇게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은 위안부가 아니라 지원단체에 대해 쓴 곳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인중 하나로, 지원단체의 판단과 태도에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분석한 부분인 것입니다.

지원단체관계자들은 그동안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해 왔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는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인 분들이 있고, 지원단체 관계자 중에도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의견을 가진 곳도 있습니다.

지원단체는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당사자의 뜻이라고만 말

하지만, 자신들의 판단을 우선시해 일본의 사죄/보상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 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리는 이유는, 피고인이 “무엇보다, 설사 모든 위안부와 지원단체가 기금을 부정한다고 해도, 그 부정이 앞에서 본 오 해에서 연유한 것이었다면,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다시 합리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위안부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이상, 해결 방식 에서도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로 남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그 방 도가 당사자의 의사를 부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 받고 그들이 납득할 필요가 있다”(189면 12줄 - 18줄)고 말하는 것처럼, 지원단체의 운동방식만으로는 위안부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언제까지나 거리에 나서게 해야 할 거라고 하는 인식에서 온 안타까움에 있 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하지만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운동’을 20년 동안이 나 계속하면서 병들고 나이든 위안부들에게 ‘한국의 자존심’을 대표하게 하는 것은 과연 ‘당사자’의 뜻을 존중한 일이었을까. 그녀들을 노구에 채 찍질하며 길거리에 나서는 ‘투사’로 만든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었 을까. 이미 한번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들에게 그런 식으로 ‘올바른’ 민족의 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 민족’의 억압이 아니었을까”(189면 23줄- 190면 6줄)라고 말합니다.

고소인측은, ‘피고인이 위안부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보도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뿌렸고, 그 결과 피고인은 전국민들의 비난을 받으면 서 이 자리에 서게까지 되었지만, 이 한줄만으로도 이 책의 취지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피고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부분은 위안부가 아니라 지원단체에 관하여 서술한 부분입니다.(즉 밑줄 쳐진 부분의 주체는 지원단체입니다. 피고인은, ‘위안부의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된 이유’를 ‘지원단체의 정보제공에서의 편향성’에서 찾고 있으며, 이 부분을 지원단체가 삭제대상으로 선택한 데서도 이들의 개입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도 삭제대상으로 요구한 것은, 저자를 고발한 것이 정말은 지원단체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고발당한 이후 피고인이 반박자료를 제출하자, 고소인측은 고발 당시 문제 삼았던 부분 중 지원단체비판부분과 뒤늦게 허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을 부분 등을 제외해 반으로 줄이고 전면판매금지요구를 일부 삭제 후 판매로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였음을 표현”한 글이 아니라 지원단체에 대해 쓴 글입니다. 다만 “위안을 애국”으로 간주했다는 기술에 관해“애국봉사대”로 불리기도 했던 위안부의 수기를 자료로 제출합니다.

(2) 지원단체가 위안부들의 기억과 목소리를 억압했고(배춘희 할머니의 증언 등을 제시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첫인식을 유지하는 정보만을 언론과 국민에게 제공해온 사실을 지적한 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자의적인 곡해와 오독으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위안부에 대한 비판으로 바꿔치기 한 대목입니다.

## <순번 20, 책 191쪽>

### 1. 검찰 기소 내용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은 이상(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

→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 강조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189면 8줄 - 191면 22줄

말하자면 위안부도 하나가 아닌 것처럼 지원단체도 하나가 아니다. 위안부들이 기금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을 수용한 위안부가 있다는 사실이나 기금에 대해 더 이상 비판적이지 않은 지원단체가 있다는 사실은 알려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설사 모든 위안부와 지원단체가 기금을 부정한다고 해도, 그 부정이 앞에서 본 오해에 연유한 것이었다면,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다시 합리적으로 풀 방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위안부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이상, 해결 방식에서도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로 남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그 방도가 당사자의 의사를 부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받고 그들이 납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원단체와 위안부의 '해결운동'이 길어지면서, 또 운동이 대외적으로 성공하면서, 수요시위를 비롯한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은

어느새 해결 자체보다도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한국의 힘'을 확인하는 싸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운동'을 20년 동안이나 계속하면서 병 들고 나이든 위안부들에게 '한국의 자존심'을 대표하게 하는 것은 과연 '당사자'의 뜻을 존중한 일이었을까. 그녀들을 노구에 채찍질하며 길거리로 내서는 '투사'로 만든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미 한 번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올바른' 민족의 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민족'의 억압이 아니었을까.

한 개인으로서의 '위안부'의 또 다른 기억이 억압되고 봉쇄되어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일본 군인과 '연애'도 하고 '위안'을 '애국'하는 일로 생각하기도 했던 위안부들의 기억이 은폐된 이유는 그녀들이 언제까지고 일본에 대해 한국이 '피해민족'임을 증명해주는 이로 존재해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들에게 개인으로서의 기억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녀들은 마치 해방 이후의 삶을 건너뛰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까지고 '15살의 소녀 피해자'이거나 '싸우는 투사 할머니'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의 그런 욕망은, 일본 군인에 대한 사랑도, 자신을 판 부모나 조선인 업자나 '주인'에 대한 미움도, 그리고 해방 후에도 50년 동안 이어진 차가운 '한국인'의 시선도 있고, 소거시킬 수밖에 없다. 오로지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원한만을 되살리기를 그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20여 년간 이어진 '위안부 문제'란, 지원단체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그런 욕망과 기대가 우선시되면서 '당사자'들의 '지금, 이곳'에서의 고통은 잊혀진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기금의 수령 여부를 둘러싸고 당사자들은 심각한 분열과 후유증을 겪었고, 건강을 해친 한 할머니는 본인이 다른 이에게 수령을 거부하도록 강하게 촉구한 일이 건강 악화의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나후사 에미코花房惠美子). 그것은 분명 국가의 또 다른 억압이었다.

기금을 반대했던 이들은 위안부 안의 분열과 지원자와 위안부의 분열이 '기금' 탓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금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기에 하는 말이다. 실제로는, 기금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기금을 만든 정부에 대한 지원자들의 이해 부족이 위안부들을 분열시켰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겪은 강간이나 가혹한 노동의 원인

은 식민지배와 국가와 남성중심주의와 근대자본주의가 빛은 가난과 차별에 있다. 나아가 그들을 그런 장소로 내몬 가부장제에 있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이용한 것은 '일본군'이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그런 시스템을 묵인한 국가에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군대를 위한 성노동을 당연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자체를 국가와 군이 지시하지 않은 이상(일본군의 공식 규율이 강간이나 무상노동, 폭행을 제어하는 입장이었던 이상)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개인이 거의 세상을 떠났거나 찾기 어려워진 이상 '범죄'로서 책임을 물을 대상은 이미 없다고 해야 한다. 대신, 구조적 강제성을 만든 책임 주체로서, 일본 국가가 그런 개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위안부들의 불행을 만든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의무적인 배상으로 질 수 있다면, 죄에 대해, 의무가 아니라도 책임을 지는 일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 90년대의 일본의 사죄와 보상이었다. 그러나 90년대의 보상은 그렇게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 역시 앞서의 지원단체 비판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앞에 “조선인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겪은 가혹한 노동의 원인은 식민지배와 국가의 남성중심주의와 근대자본주의가 빛은 가난과 차별에 있다. 나아가 그들을 그런 장소로 내몬 가부장제에 있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이용한 것은 '일본군'이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그런 시스템을 목인한 국가에 있다”고 서술함으로써, 일본의 관여나 책임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을 전쟁에 동원하는 국가의 책임을 시스템(구조)의 문제로, 즉 위안부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물으면서, 민족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의 반복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지원단체는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계적 여성연대는 가능했었을지언정 국가나 가부장제 문제를 이해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원단체는 그동안 물리적 강제연행인 것으로 생각하고 “법적책임”을 주장해 왔지만(후엔 아닌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언론과 국민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그렇게만 주장하는 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강제연행”주장을 근본적으로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책에서 ‘강제연행이 없었다 해도 구조적 강제성이 있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 일본의 부정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른바 ‘강제연행’설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하지만 위안부를 모집한 중심 주체가 민간인이라 해도, 또 모집하는 데에 사기나 납치 등의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병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부 역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이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려 했다 해도 불법적인 수단이 자행되는 시스템 자체를 방기했다면 시스템을 유지시킨 책임이 군에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군이 위안부 모집에서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분명히 군이 ‘직접’모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것은 밀수품을 막으려는 국가의 태도에 비교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군은 이때 소비자가 밀수품을

사지 않도록 밀수품을 막으려 했던 것이지만 정식 관세를 내면 통과시키는 식으로 수입 자체는 허가한 셈이다.”(151면 13줄-끝줄)

“그런 식의 일방적 권력의 존재는 군이 시스템을 ‘관리’한 관리자라는 사실, 다시 말해 ‘관여’했을 뿐 아니라 주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군이 모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군의 관여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이유다.

군이 물리적으로 행사한 ‘강제연행’을 글자 그대로 ‘강제’, ‘연행’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강제연행’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사기든 납치든 업자와 포주들이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일이 빈번했던 위안소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범자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살인교사와 비슷한 구조일밖에 없고, 그런 시스템을 필요로 한 것이 군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군인에 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강제’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당연하다.”(152면 8줄-19줄)

“‘위안부’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온건했고 좋은 통치였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온건하고 좋은 통치란 어디까지나 체제에 저항하지 않는 이들에게 한정된 것이었다.”(153면 첫줄-3줄)

“‘위안부’모집에서 업자와 포주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라고 이해해야 한다. ‘온건통치’의 범주에 ‘자발적으로’ 편입된 이들이 ‘개인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자신들의 손은

더럽히지 않고(온건통치를 유지하면서) 식민지인들에게 불법행위를 전담시켜  
그들을 동족에 대한 가해자로 만들었다.”(153면 12줄-16줄)

“그러니,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군의 관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21군 사령부가 위안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내무성에 400명,  
대만 총독부에 300명의 여성을 모집해주기를 요청한 경위를 나타내는 자  
료’(요시미 요시아키. 2007. 5. ) 외에도 위안부의 증언과 군인이 남긴 다수  
의 기록에서 위안부 제도에 대한 군의 관여는 명백히 드러난다. 모든 위안소  
가 ‘군이 설치한, 군인 군속 전용 제도’(위의 글)라고 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군이 위안소를 필요로 하고 이용한 이상 위안소에 대한 군의 관여를  
부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군이 주체가 되는 ‘강제연행’을 하지 않았다  
해도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군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해야 한다.”(153면 22줄-154면 7줄)

“ 당시에는 ‘상식’이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공창제도가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했다고는 말할 수 없”(같은 글)다. 게다가 설령 ‘어디에  
나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위안소 이용이 문제없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어디에나 존재했다’는 말은 합법성을 주장하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성 중심의 사고일 뿐이다.”(155면 5줄-9줄)

“‘상식’론 또는 ‘합법’론자들은 당시는 ‘모두’ 그랬다는 말로  
‘위안부’문제를 부정한다. 그러나 ‘모두’란 누구였을까. ‘모두’ 그랬  
다는 말은 대개의 경우 ‘모두’에 포함되려 하지 않은 이들을 빼놓는 경우  
가 많지만, 무엇보다 ‘모두’라는 말은 개인을 집단 속에 숨게 만든다. 다

시 말해 ‘모두’라는 말은 발화자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죄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그런 식의 ‘모두’에는, ‘모두’로 지칭되는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본래의 힘은 사라지고 집단의 ‘폭력성’과 비겁함만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그런 식의 ‘모두’는, 언제나 숫자가 많은 것을 이용해 논의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그렇지만 그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상상을 통해 인류는 전쟁을 일으키고 지배를 정당화해왔다.”(155면 끝줄-156면 9줄)

“하지만 ‘위안부’의 존재를 그저 ‘상식’으로만 여기는 것은 위안부라는 존재가 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에 대해 사고하기를 포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동시대 사람들이 ‘상식’으로 용인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공통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런 구조가 현재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사 과거의 일이라 해도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었음을 새로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156면 18줄-끝줄) 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은 비강제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저 ‘군에 의한 강제성’ 인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물리적 강제성의 주체는 많은 경우 유괴범이나 업자 등이었음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책임을 묻는 책임입니다. ‘전쟁 책임’ 이상으로 조선인 위안부의 경우 ‘식민지 책임’으로 묻는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인 일본의 지식인과 시민이 호응하고, <강제 연행>을 부정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했던 이들조차 변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

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모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끌어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자들에게 본인이 부모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그러한 정황을 말해주는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오래 연구해 온 학자들도 이미 여러 사람이 위안부 제도를 공창제와 연계시켜 논합니다. 또한 2015년 5월에 아베수상에게 사죄를 요구한 미국의 역사학자들도 성명서에서 “군대와 관련된 매춘”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에 처음부터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아사히 신문도 2014년 8월, 과거에 강제연행했다고 썼던 보도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위안부 제도를 지탱한 것이 인신매매라는 사실은 한국의 한겨레 신문도 2016년에 보도했습니다.

일부 지원단체나 일부 학자는 인신매매나 유괴를 일본군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말하지만 일본의 공식 방침은 그러한 사기나 유괴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고, 당시 식민지 경찰은 인신매매를 엄중히 단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인 위안부의 대부분이 군에 의한 강제연행이 아니라, 그밖에 정황에서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위안부의 증언집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 <순번 21, 책 205쪽>

### 1. 검찰 기소 내용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04면 5줄 - 209면 끝줄

2011년 12월에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서게 된 소녀상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정대협이 생각하는 '위안부'상의 결정판이다.

소녀상은 분명 성노동을 강요당한 '위안부'를 상징하는 상일 텐데, 성적 이미지와는 무관해 보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다. 말하자면 대사관 앞에 서 있는 것은 위안부가 된 이후의 실제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다. 혹은 앞에서 살펴본, 위안부의 평균 연령이 25세였다는 자료를 참고한다면, 실제로 존재한 대다수의 성인 위안부가 아니라 예외적인 존재였던 위안부만을 대표하는 상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사관 앞 소녀상이 실제 위안부를 상징하는 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소녀상은 마치 '위안부'의 대부분이 소녀였던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소녀 위안부'의 기억을 강화시켜 나간다.

소녀의 단발머리는 그녀를 단정한 학생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학교교육을 아예 혹은 조금밖에 받지 못한 이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소녀상은 실제 조선인 위안부와는 거리가 있다.

소녀가 맨발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끌려갔다는 것을 상상하도록 만든다. 주먹을 쥐고 쏘아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은 '강제로 끌려간' 데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

다. 말하자면 소녀상은 '저항하는 위안부'일 뿐 일본군과의 다른 관계는 드러내지 않는다. 혹은 그 분노가 '일본군'이외의 존재를 향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소녀상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저항하고 싸우는 소녀'의 모습이야말로 한국인이 자신과 오버랩시키고 싶어하는 아이덴티티로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소녀상이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은 실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리얼리티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위안부'를 바람직한 '민족의 딸'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그러다 보니 소녀상은, 그녀가 때로 가족을 위해 나섰던 희생정신도, 아들이 아닌 딸이 팔려가기 쉬웠던 가부장제하의 피해자성도, 그녀들을 '강제로 끌고 간' 우리 안의 가해자들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녀상은 일본에 저항해 목숨을 잃은 유관순을 아주 많이 닮아 있다.

소녀상이 저항하는 모습만 표현하는 이상, 일본옷을 입었던 일본이름의 '조선인 위안부'의 기억이 등장할 여지는 없다. 그들의 또 다른 생활과 기억, 일본 군인을 간호하고 사랑하고 함께 놀며 웃었던 기억을 가진 '위안부'는 그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곳에는 군인을 자신과 같은 운명에 떨어진 가엾은 존재로 간주하고 동정했던 위안부도 물론 없다.

소녀상에는 '평화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러나 용서의 기억을 소거한 눈은 원한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는 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적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일본보다 조선이 더 밍다'는 위안부들 역시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곳에는 '조선인 위안부는 없다'.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저 협력과 오욕의 기억을 당사자도

보는 이도 함께 소거해버린 '민족의 피해자'로서의 상일 뿐이다.

소녀가 '성처녀'로서의 '순결'과 '저항'의 이미지만 담고 있는 것은 그래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소녀상은 부끄러운 기억을 망각하거나 규탄하여 '우리' 밖으로 내몰아온 해방 후 60여 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해방 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총체적인 우리 자신을 끌어안고 넘어서려 하지는 않았던 세월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위안부가 되기 전에 그렇게 어린 '소녀'를 내몬 '손' 또한 우리 안의 또 다른 손이기도 했다는 것은 잊은 채로.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다.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그들은, '한복'을 입은 땡기머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였다.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위안부'가 되기 전의 순수한 모습만을 기억하는 것은 '더럽혀지기 전의 우리 자신을 상상하고 간직하는 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식민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것을 여전히 외면하는 일이다. 따라서 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조선인 위안부'도 아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없다.

위안부가 대표하는 '식민지' 체험은 '기념'되고 '현창'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체험이다. '위안부'가 '유관순'일 수 없는 것은 그 점에 있다. 물론 일제가 만든 시스템과 인프라를 향유한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순을 내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식민지화란 구성원 누구나가 분열증을 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도 하

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혹한 존재이긴 했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그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배척과 말살의 대상이 되었던 홀로코스트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대협은 최근 들어 위안부 문제를 ‘홀로코스트’에 비견하지만(『홀로코스트 위안부 다음달 역사적 만남』, 『연합뉴스』, 2011.11.21.),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극소수이니 위안부와는 구조가 다르다). 그런 차이를 무시한 일은 우리 자신을 ‘완벽한 피해자’로 상상하려는 왜곡된 욕망의 표현일 뿐이다.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위안부’에게 종용한 것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은 일상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지내는 일, 즉 ‘민족의 딸’로 존재해주는 일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을 그녀들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다.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하는 2011년 12월 14일에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이유는 거기에 있다. 위안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다 해도, 소녀는 계속 그곳에서 일본을 규탄할 것이다. 설사 운동가가 운동을 접는다 해도.

그런 의미에서는, 소녀상은 위안부 자신이라기보다는 정대협의 이상을 대변하는 상이다. 다시 말해 소녀상은 ‘그때의 조선인 위안부’라기보다는 ‘20여 년의 데모’와 운동가가 된 위안부이다.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호순/미선의 부모는 “억울한 내 딸 두 번 죽이지 마라”(『주간 동아』, 2003.6.26.), “이제 가족들만 단출하게 모여 그 애들을 생각하고 싶다”(『조선닷컴』, 2012.6.4.)고 말했다고 한다. 그건 그들이 바로 소녀들의 부모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딸들이 언제까지고 ‘미국에 의한 피해자’로 기억되면서 ‘민족의 소녀’가 되어 ‘반미’의 상징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자 소녀’의 이미지는 아름다운 숙녀로 자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을 ‘나의 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 그것은 소녀들은 물론이지만 부모들에게서도 안식과 평화를 뺏는 일이 된다.

일본에게 입은 피해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사관 앞 소녀상은 절반의 진실을 나타낼 뿐이다.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식민지인이었기에, 하나의 기억만을 가질 수는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소녀상은 이제 한국 안의 다른 장소(통영, 공주 등)로, 그리고 미국에까지 확산되는 중이다. 미국에 설립된 위안부 기림비는 ‘강제로 끌려간 20만 명의 소녀’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그런 한 그 비는 ‘위안부’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식 기억’을 표현한 것일 뿐 위안부 자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것은 일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기억만을 내세울수록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또 다른 기억만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자의 기억만 고수하는 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오지 않는다.

‘위안부’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세워져야 하는 장소는 위안소가 있었던 장소이거나 그녀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장소가 더 적절하다. 또 원한보다는 슬픔을, 분노보다는 절망을, 그리고 일제에 의해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의 모순을 표현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다. 지금의 소녀상은 ‘평화’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 상이 일본의 굴복만을 요구하는 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소녀상은 언제까지고 평화 아닌 불화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실제로 2011년 겨울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의 한일관계가 극단적으로 불화로 치달았던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소녀상은 우익뿐 아니라 한국에 호의적이었던 양심적인 일본인까지도 한국에 등을 돌리거나 무관심해지도록 만들었다. 소녀상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을 뿐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도 정대협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물론 피고인은 정대협의 활동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인식으로 과장 혹은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여(전시관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그런 인식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분노만을 유발하고 일본인의 반발을 유도하는 정황이 위안부 문제 해결과는 먼 방향이고 태도임을 지적하려 했을 뿐입니다.

니다.

구체적으로 “소녀상은 마치 ‘위안부’의 대부분이 소녀였던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204면 13줄-14줄)는 점에서 “소녀상은 실제 조선인 위안부와는 거리가 있다”(205면 3줄 -4줄)고 지적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 부분입니다.

(2)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 식민지 지배 하에서 일본인으로서의 협력을 요구당했고 그에 따라 신체를 착취당한 성노예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군인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말한 앞부분에 근거해 다시 환기시킵니다.

“그들을 보살피고”란, 마음이 담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앞에서 본 것처럼 간호를 하고 빨래를 하고 묘지에 향을 피웠던 부분 등을 말하고, “사기를 진작”했다는 것은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에 대한 환영/환송회에 참석하고 애인이 되었던 일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그저 애국적 협력자로 간주하고 문제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고소인입니다.

(3) 피고인이 이런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소녀상은, 그녀가 때로 가족을 위해 나섰던 희생정신도, 아들이 아닌 딸이 팔려가기 쉬웠던 가부장제하의 피해성도, 그녀들을 ‘강제로 끌고 간’ 우리 안의 가해자들도 보여주지 않는다”(205면 19줄-21줄)는 데에 있습니다.

한국의 위안부 지원단체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 부정자들이 조선인 위안

부를 둘러싼 “사실”을 책임회피 이유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저 “거짓말”이라고만 주장하며 비난합니다.

피고인은 그러한 한국의 지원단체가 안타까워, 설사 외견이 그렇더라도 “왜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지”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사실이 언젠가 알려졌을 때 실망하여 “그녀들을 손가락질 할 지 모를”(206면 23줄) 한국인을 향해, 그 “손가락질”의 자격이 없음을, “위안부가 되기 전에 그렇게 어린 소녀를 내몬 손 또한 우리 안의 다른 손이었음”을, 위안부들/소녀들을 공동체 바깥으로 내몬 것은 우리자신이기도 했다는 것을, 환기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안부를 둘러싼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그 “사실”이 위안부를 비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점을 모두 도외시하고, 고소인측과 검찰은 피고인이 마치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고의, 혹은 악의로 책을 곡해해 국민들이 피고인을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4)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207면 2줄-3줄),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207면 8줄-9줄)라는 서술에, 피고인의 집필취지와 인식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슬픔과 굴욕”을 일본인들에게 환기시키고 “식민지”화란 그런 것이었다고 강조하여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하고자 한 집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207면 11줄)이란, ‘협력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든 일본에게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도록 만드는 서술’인 것입니다.

## <순번 22, 책 206쪽>

### 1. 검찰 기소 내용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04면 5줄 - 209면 끝줄

2011년 12월에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서게 된 소녀상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정대협이 생각하는 '위안부'상의 결정판이다.

소녀상은 분명 성노동을 강요당한 '위안부'를 상징하는 상일 텐데, 성적 이미지와는 무관해 보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다. 말하자면 대사관 앞에 서 있는 것은 위안부가 된 이후의 실제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다. 혹은 앞에서 살펴본, 위안부의 평균 연령이 25세였다는 자료를 참고한다면, 실제로 존재한 대다수의 성인 위안부가 아니라 예외적인 존재였던 위안부만을 대표하는 상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사관 앞 소녀상이 실제 위안부를 상징하는 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소녀상은 마치 '위안부'의 대부분이 소녀였던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소녀 위안부'의 기억을 강화시켜 나간다.

소녀의 단발머리는 그녀를 단정한 학생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학교교육을 아예 혹은 조금밖에 받지 못한 이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소녀상은 실제 조선인 위안부와는 거리가 있다.

소녀가 맨발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끌려갔다는 것을 상상하도록 만든다. 주먹을 쥐고 쏘아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은 ‘강제로 끌려간’ 데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다. 말하자면 소녀상은 ‘저항하는 위안부’일 뿐 일본군과의 다른 관계는 드러내지 않는다. 혹은 그 분노가 ‘일본군’이외의 존재를 향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소녀상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저항하고 싸우는 소녀’의 모습이야말로 한국인이 자신과 오버랩시키고 싶어하는 아이덴티티로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소녀상이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은 실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리얼리티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위안부’를 바람직한 ‘민족의 딸’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그러다 보니 소녀상은, 그녀가 때로 가족을 위해 나섰던 희생정신도, 아들이 아닌 딸이 팔려가기 쉬웠던 가부장제하의 피해자성도, 그녀들을 ‘강제로 끌고 간’ 우리 안의 가해자들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녀상은 일본에 저항해 목숨을 잃은 유관순을 아주 많이 닮아 있다.

소녀상이 저항하는 모습만 표현하는 이상, 일본옷을 입었던 일본이름의 ‘조선인 위안부’의 기억이 등장할 여지는 없다. 그들의 또 다른 생활과 기억, 일본 군인을 간호하고 사랑하고 함께 놀며 웃었던 기억을 가진 ‘위안부’는 그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곳에는 군인을 자신과 같은 운명에 떨어진 가없는 존재로 간주하고 동정했던 위안부도 물론 없다.

소녀상에는 ‘평화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러나 용서의 기억을 소거한 눈은 원한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는 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적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일본보다 조선이 더 밍다’는 위안부들 역시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곳에는 ‘조선인 위안부는 없다’.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

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저 협력과 오욕의 기억을 당사자도 보는 이도 함께 소거해버린 ‘민족의 피해자’로서의 상일 뿐이다.

소녀가 ‘성처녀’로서의 ‘순결’과 ‘저항’의 이미지만 담고 있는 것은 그래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소녀상은 부끄러운 기억을 망각하거나 규탄하여 ‘우리’ 밖으로 내몰아온 해방 후 60여 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해방 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총체적인 우리 자신을 끌어안고 넘어서려 하지는 않았던 세월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위안부가 되기 전에 그렇게 어린 ‘소녀’를 내몬 ‘손’ 또한 우리 안의 또 다른 손이기도 했다는 것은 잊은 채로.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다.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 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 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그들은, ‘한복’을 입은 땡기머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였다.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위안부’가 되기 전의 순수한 모습만을 기억하는 것은 ‘더럽혀지기 전의 우리 자신을 상상하고 간직하는 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식민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것을 여전히 외면하는 일이다. 따라서 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조선인 위안부’도 아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없다.

위안부가 대표하는 ‘식민지’ 체험은 ‘기념’되고 ‘현창’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체험이다. ‘위안부’가 ‘유관순’일 수 없는

것은 그 점에 있다. 물론 일제가 만든 시스템과 인프라를 향유한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순을 내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식민지화란 구성원 누구나가 분열증을 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혹한 존재이긴 했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그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배척과 말살의 대상이 되었던 홀로코스트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대협은 최근 들어 위안부 문제를 ‘홀로코스트’에 비견하지만(「홀로코스트 위안부 다음달 역사적 만남」, 『연합뉴스』, 2011.11.21.),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극소수이니 위안부와는 구조가 다르다). 그런 차이를 무시한 일은 우리 자신을 ‘완벽한 피해자’로 상상하려는 왜곡된 욕망의 표현일 뿐이다.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위안부’에게 종용한 것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은 일상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지내는 일, 즉 ‘민족의 딸’로 존재해주는 일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을 그녀들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다.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하는 2011년 12월 14일에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이유는 거기에 있다. 위안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다 해도, 소녀는 계속 그곳에서 일본을 규탄할 것이다. 설사 운동가가 운동을 접는다 해도.

그런 의미에서는, 소녀상은 위안부 자신이라기보다는 정대협의 이상을 대변하는 상이다. 다시 말해 소녀상은 ‘그때의 조선인 위안부’라기보다는 ‘20여 년의 데모’와 운동가가 된 위안부이다.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호순/미선의 부모는 “억울한 내 딸 두 번 죽이지 마라”(『주간 동아』, 2003.6.26.), “이제 가족들만 단출하게 모여 그 애들을 생각하고 싶다”(『조선닷컴』, 2012.6.4.)고 말했다고 한다. 그건 그들이 바로 소녀들의 부모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딸들이 언제까지고 ‘미국에 의한 피해자’로 기억되면서 ‘민족의 소녀’가 되어 ‘반미’의 상징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자 소녀’의 이미지는 아름다운 숙녀로 자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을 ‘나의 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 그것은 소녀들은 물론이지만 부모들에게서도 안식과 평화를 뺏는 일이 된다.

일본에게 입은 피해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사관 앞 소녀상은

절반의 진실을 나타낼 뿐이다.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식민지인이었기에, 하나의 기억만을 가질 수는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소녀상은 이제 한국 안의 다른 장소(통영, 공주 등)로, 그리고 미국에까지 확산되는 중이다. 미국에 설립된 위안부 기림비는 ‘강제로 끌려간 20만 명의 소녀’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그런 한 그 비는 ‘위안부’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식 기억’을 표현한 것일 뿐 위안부 자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것은 일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기억만을 내세울수록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또 다른 기억만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자의 기억만 고수하는 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오지 않는다.

‘위안부’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세워져야 하는 장소는 위안소가 있었던 장소이거나 그녀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장소가 더 적절하다. 또 원한보다는 슬픔을, 분노보다는 절망을, 그리고 일제에 의해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의 모순을 표현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다. 지금의 소녀상은 ‘평화’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 상이 일본의 굴복만을 요구하는 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소녀상은 언제까지고 평화 아닌 불화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실제로 2011년 겨울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의 한일관계가 극단적으로 불화로 치달았던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소녀상은 우익뿐 아니라 한국에 호의적이었던 양심적인 일본인까지도 한국에 등을 돌리거나 무관심해지도록 만들었다. 소녀상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을 뿐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 역시 정대협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대협이 제공해온 위안부 문제 관련 정보와 소녀상’이 위안부 문제의 복잡성을 소거시키고 국민의 증오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오히려 위안

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름은 “평화비”지만 결과적으로 적대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을 지적한 다음 부분입니다.

(2) 정대협은 현존 위안부가 적은 이유가 일본군이 학살했기 때문인 것처럼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안부는 돌아오거나 자신의 선택으로 그 땅에 머무른 정황이 위안부의 증언에 보입니다.

해방 시점까지 생존했는데도 돌아오지 못한 경우는, 스스로 남았거나 귀국 과정에서의 곤경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패전직후엔 소련군이 진주했던 만주와 한반도 북쪽에서는 일본인조차 민간인만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대협이 위안부가 학살당해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미지를 정착시켰지만 이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의 소녀 20만명  
패전 직후 일본군에 의해 대부분 학살 당하고  
조선으로 살아 돌아온 소녀는 2만여명  
용기내어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234명의 할머니  
평균 연령 84세, 현재 살아있는 생존자는 55명

이제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고  
행동하는  
평화나비



 **서울특별시** 가 후원합니다.

대학생들의 열정가득 개념행동  
**2014 평화나비 콘서트** 화이팅!

2014  
평화나비  
콘서트  
평화나비콘서트 추진위원회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  서울특별시

실제로 패전이후 일본군인과 함께 일본을 건너간 위안부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증언과 자료 등에 보입니다.

일본인이 조선인을 쉽게 학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36년간 지냈다는 것을 망각한 인식입니다. 체제에 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해서 순종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식민통치의 기본법칙입니다. “일선동조론”을 강조하고 내선일체 결혼을 장려한 것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을 추정처럼 쓰고 있지만 애인으로서 일본으로 가거나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간 케이스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간주되어야했던 식민지 지배가 만든 것임을 염두에 둔 기술입니다.

한 교과서(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만든 위안부 관련 교재)에 등장한 “그 애기들었어요? 명자가 3년간 일본군에게 몸팔다 왔다”라는 수군거림이야말로 타자들이 본 “협력한 기억”이며, 그러한 수군거림이야말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는 우리 안의 책임을 말한 부분입니다.

(4) 따라서 이 부분은 ‘그러한 협력과 오욕의 기억을 “소거”한 소녀상’ (206면 13줄-15줄)을 만든 정대협에 대한 비판일 뿐,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이거나 자긍적 협력자” 라고 강조한 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만으로 이 부분을 협력에 대해 말하는 글로 읽는 것은 고소인측과 검찰의 잘못된 독해일 뿐입니다.

## <순번 23, 책 206쪽>

### 1. 검찰 기소 내용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 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04면 5줄 - 209면 끝줄

2011년 12월에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서게 된 소녀상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정대협이 생각하는 '위안부'상의 결정판이다.

소녀상은 분명 성노동을 강요당한 '위안부'를 상징하는 상일 텐데, 성적 이미지와는 무관해 보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다. 말하자면 대사관 앞에 서 있는 것은 위안부가 된 이후의 실제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다. 혹은 앞에서 살펴본, 위안부의 평균 연령이 25세였다는 자료를 참고한다면, 실제로 존재한 대다수의 성인 위안부가 아니라 예외적인 존재였던 위안부만을 대표하는 상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사관 앞 소녀상이 실제 위안부를 상징하는 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소녀상은 마치 '위안부'의 대부분이 소녀였던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소녀 위안부'의 기억을 강화시켜 나간다.

소녀의 단발머리는 그녀를 단정한 학생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학교교육을 아예 혹은 조금밖에 받지 못한 이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소녀상은 실제 조선인 위안부와는 거리가 있다.

소녀가 맨발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끌려갔다는 것을 상상하도록 만든다. 주먹을 쥐고 쏘아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은 '강제로 끌려간'데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다. 말하자면 소녀상은 '저항하는 위안부'일 뿐 일본군과의 다른 관계는 드러내지 않는다. 혹은 그 분노가 '일본군'이외의 존재를 향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소녀상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저항하고 싸우는 소녀'의 모습이야말로 한국인이 자신과 오버랩시키고 싶어하는 아이덴티티로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소녀상이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은 실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리얼리티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위안부'를 바람직한 '민족의 딸'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그러다 보니 소녀상은, 그녀가 때로 가족을 위해 나섰던 희생정신도, 아들이 아닌 딸이 팔려가기 쉬웠던 가부장제하의 피해자성도, 그녀들을 '강제로 끌고 간' 우리 안의 가해자들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녀상은 일본에 저항해 목숨을 잃은 유관순을 아주 많이 닮아 있다.

소녀상이 저항하는 모습만 표현하는 이상, 일본옷을 입었던 일본이름의 '조선인 위안부'의 기억이 등장할 여지는 없다. 그들의 또 다른 생활과 기억, 일본 군인을 간호하고 사랑하고 함께 놀며 웃었던 기억을 가진 '위안부'는 그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곳에는 군인을 자신과 같은 운명에 떨어진 가엾은 존재로 간주하고 동정했던 위안부도 물론 없다.

소녀상에는 '평화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러나 용서의 기억을 소거한 눈은 원한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는 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적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일본보다 조선이 더 밍다'는 위안부들 역시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곳에는 '조선인 위안부는 없다'.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저 협력과 오욕의 기억을 당사자도 보는 이도 함께 소거해버린 '민족의 피해자'로서의 상일 뿐이다.

소녀가 '성처녀'로서의 '순결'과 '저항'의 이미지만 담고 있는 것은 그래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소녀상은 부끄러운 기억을 망각하거나 규탄하여 '우리' 밖으로 내몰아온 해방 후 60여 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해방 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총체적인 우리 자신을 끌어안고 넘어서려 하지는 않았던 세월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위안부가 되기 전에 그렇게 어린 '소녀'를 내몬 '손' 또한 우리 안의 또 다른 손이기도 했다는 것은 잊은 채로.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다.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그들은, '한복'을 입은 땡기머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였다.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위안부'가 되기 전의 순수한 모습만을 기억하는 것은 '더럽혀지기 전의 우리 자신을 상상하고 간직하는 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식민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것을 여전히 외면하는 일이다. 따라서 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조선인 위안부'도 아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없다.

위안부가 대표하는 '식민지' 체험은 '기념'되고 '현창'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체험이다. '위안부'가 '유관순'일 수 없는 것은 그 점에 있다. 물론 일제가 만든 시스템과 인프라를 향유한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순을 내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식민지화란

구성원 누구나가 분열증을 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혹한 존재이긴 했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그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배척과 말살의 대상이 되었던 홀로코스트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대협은 최근 들어 위안부 문제를 ‘홀로코스트’에 비견하지만(『홀로코스트 위안부 다음달 역사적 만남』, 『연합뉴스』, 2011.11.21.),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극소수이니 위안부와는 구조가 다르다). 그런 차이를 무시한 일은 우리 자신을 ‘완벽한 피해자’로 상상하려는 왜곡된 욕망의 표현일 뿐이다.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위안부’에게 종용한 것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은 일상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지내는 일, 즉 ‘민족의 딸’로 존재해주는 일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을 그녀들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다.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하는 2011년 12월 14일에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이유는 거기에 있다. 위안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다 해도, 소녀는 계속 그곳에서 일본을 규탄할 것이다. 설사 운동가가 운동을 접는다 해도.

그런 의미에서는, 소녀상은 위안부 자신이라기보다는 정대협의 이상을 대변하는 상이다. 다시 말해 소녀상은 ‘그때의 조선인 위안부’라기보다는 ‘20여 년의 데모’와 운동가가 된 위안부이다.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호순/미선의 부모는 “억울한 내 딸 두 번 죽이지 마라”(『주간 동아』, 2003.6.26.), “이제 가족들만 단출하게 모여 그 애들을 생각하고 싶다”(『조선닷컴』, 2012.6.4.)고 말했다고 한다. 그건 그들이 바로 소녀들의 부모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딸들이 언제까지고 ‘미국에 의한 피해자’로 기억되면서 ‘민족의 소녀’가 되어 ‘반미’의 상징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자 소녀’의 이미지는 아름다운 숙녀로 자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을 ‘나의 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 그것은 소녀들은 물론이지만 부모들에게서도 안식과 평화를 뺏는 일이 된다.

일본에게 입은 피해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사관 앞 소녀상은 절반의 진실을 나타낼 뿐이다.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식민지인이었기에, 하나의 기억만을 가질 수는 없는 존재

였다.

그런데 소녀상은 이제 한국 안의 다른 장소(통영, 공주 등)로, 그리고 미국에까지 확산되는 중이다. 미국에 설립된 위안부 기림비는 ‘강제로 끌려간 20만 명의 소녀’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그런 한 그 비는 ‘위안부’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식 기억’을 표현한 것일 뿐 위안부 자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것은 일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기억만을 내세울수록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또 다른 기억만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자의 기억만 고수하는 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오지 않는다.

‘위안부’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세워져야 하는 장소는 위안소가 있었던 장소이거나 그녀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장소가 더 적절하다. 또 원한보다는 슬픔을, 분노보다는 절망을, 그리고 일제에 의해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의 모순을 표현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다. 지금의 소녀상은 ‘평화’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 상이 일본의 굴복만을 요구하는 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소녀상은 언제까지고 평화 아닌 불화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실제로 2011년 겨울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의 한일관계가 극단적으로 불화로 치달았던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소녀상은 우익뿐 아니라 한국에 호의적이었던 양심적인 일본인까지도 한국에 등을 돌리거나 무관심해지도록 만들었다. 소녀상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을 뿐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글은 소녀상에 관한 분석 부분이며, 위안부 문제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정대협에 대한 비판의 일부입니다.

(2) “순결한 소녀상”이 “오욕의 역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막았던 60

여년의 세월을 상징”하고 있으며 (206면 16줄-20줄), 일제시대가 끝난 이후 그 시대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아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단순해진 데에 대한 “세월”에 대한 비판이자, 그런 세월을 답습하고 유지시켜온 데 대한 “정대협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부분인 것입니다.

단순한 구분/이해(친일파와 저항자/가해와 피해)만으로 일제시대를 이해하는 한, 위안부가 단순히 “조선인”으로서 성적착취를 당한 존재일 뿐 아니라, 좋으나 싫으나 “일본인”으로서 협력해야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그녀들에 대한 동정의 시선을 거들 뿐 아니라 원래 존재한 매춘차별적인 시선으로 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위안부가 일본에 애국적 자궁적 협력자였다”고 지적하는 글이 아닙니다.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1장에서 보아 온 사실을 바탕으로 그런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쓴 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적도 검찰의 오독임이 명백합니다.

(3) 피고인의 관심은, 이러한 사실들 자체가 아니라 “식민지가 무엇이었는데를 보는 것을 여전히 외면하는 일”(207면 14줄)에 있습니다. “식민지화, 즉 구성원 누구나가 분열증을 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207면 19줄-20줄)야말로, 대한민국의 좌우분열의 주요한 이유이며, 그러한 부분을 직시해야만 한국 내 분열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이 모든 서술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한일화해만이 아니라 우리안의 좌우화해, 남북화해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그런 방향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기억만을 내세울수록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또 다른 기억만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각자의 기억만 고수하는 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오지 않는다”(209면 9줄-11줄)는 말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4) 이 책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비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증언이 변해온 할머니에 대해서조차, 피고인은 그 할머니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만든 일본이자 한국사회, 그리고 나아가 국가세력에 확장에 여성들을 동원한 국가/제국인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90년대에 조명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냉전이 종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그러한 분열과 적대를 직시하는 일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이 책의 주요테마이자 집필목적입니다.

## <순번 24, 책 207쪽>

### 1. 검찰 기소 내용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04면 5줄 - 209면 끝줄

2011년 12월에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서게 된 소녀상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정대협이 생각하는 '위안부'상의 결정판이다.

소녀상은 분명 성노동을 강요당한 '위안부'를 상징하는 상일 텐데, 성적 이미지와는 무관해 보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다. 말하자면 대사관 앞에 서 있는 것은 위안부가 된 이후의 실제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다. 혹은 앞에서 살펴본, 위안부의 평균 연령이 25세였다는 자료를 참고한다면, 실제로 존재한 대다수의 성인 위안부가 아니라 예외적인 존재였던 위안부만을 대표하는 상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사관 앞 소녀상이 실제 위안부를 상징하는 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소녀상은 마치 '위안부'의 대부분이 소녀였던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소녀 위안부'의 기억을 강화시켜 나간다.

소녀의 단발머리는 그녀를 단정한 학생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학교교육을 아예 혹은 조금밖에 받지 못한 이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소녀상은 실제 조선인 위안부와는 거리가 있다.

소녀가 맨발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끌려갔다는 것을 상상하도록 만든다. 주먹을 쥐고 쏘아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은 '강제로 끌려간'데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다. 말하자면 소녀상은 '저항하는 위안부'일 뿐 일본군과의 다른 관계

는 드러내지 않는다. 혹은 그 분노가 ‘일본군’이외의 존재를 향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소녀상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저항하고 싸우는 소녀’의 모습이야말로 한국인이 자신과 오버랩시키고 싶어하는 아이덴티티로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소녀상이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은 실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리얼리티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위안부’를 바람직한 ‘민족의 딸’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그러다 보니 소녀상은, 그녀가 때로 가족을 위해 나섰던 희생정신도, 아들이 아닌 딸이 팔려가기 쉬웠던 가부장제하의 피해자성도, 그녀들을 ‘강제로 끌고 간’ 우리 안의 가해자들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녀상은 일본에 저항해 목숨을 잃은 유관순을 아주 많이 닮아 있다.

소녀상이 저항하는 모습만 표현하는 이상, 일본옷을 입었던 일본이름의 ‘조선인 위안부’의 기억이 등장할 여지는 없다. 그들의 또 다른 생활과 기억, 일본 군인을 간호하고 사랑하고 함께 놀며 웃었던 기억을 가진 ‘위안부’는 그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곳에는 군인을 자신과 같은 운명에 떨어진 가엾은 존재로 간주하고 동정했던 위안부도 물론 없다.

소녀상에는 ‘평화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러나 용서의 기억을 소거한 눈은 원한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는 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적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일본보다 조선이 더 밍다’는 위안부들 역시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곳에는 ‘조선인 위안부는 없다’.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저 협력과 오욕의 기억을 당사자도 보는 이도 함께 소거해버린 ‘민족의 피해자’로서의 상일 뿐이다.

소녀가 '성처녀'로서의 '순결'과 '저항'의 이미지만 담고 있는 것은 그래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소녀상은 부끄러운 기억을 망각하거나 규탄하여 '우리' 밖으로 내몰아온 해방 후 60여 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해방 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총체적인 우리 자신을 끌어안고 넘어서려 하지는 않았던 세월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위안부가 되기 전에 그렇게 어린 '소녀'를 내몬 '손' 또한 우리 안의 또 다른 손이기도 했다는 것은 잊은 채로.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다.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그들은, '한복'을 입은 땡기머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였다.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위안부'가 되기 전의 순수한 모습만을 기억하는 것은 '더럽혀지기 전의 우리 자신을 상상하고 간직하는 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식민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것을 여전히 외면하는 일이다. 따라서 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조선인 위안부'도 아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없다.

위안부가 대표하는 '식민지' 체험은 '기념'되고 '현창'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체험이다. '위안부'가 '유관순'일 수 없는 것은 그 점에 있다. 물론 일제가 만든 시스템과 인프라를 향유한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순을 내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식민지화란 구성원 누구나가 분열증을 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혹한 존재이긴 했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그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배척과 말살의 대상이 되었던 홀로코스트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대협은 최근 들어 위안부 문제를 ‘홀로코스트’에 비견하지만(『홀로코스트 위안부 다음달 역사적 만남』, 『연합뉴스』, 2011.11.21.),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극소수이니 위안부와는 구조가 다르다). 그런 차이를 무시한 일은 우리 자신을 ‘완벽한 피해자’로 상상하려는 왜곡된 욕망의 표현일 뿐이다.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위안부’에게 종용한 것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은 일상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지내는 일, 즉 ‘민족의 딸’로 존재해주는 일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을 그녀들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다.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하는 2011년 12월 14일에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이유는 거기에 있다. 위안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다 해도, 소녀는 계속 그곳에서 일본을 규탄할 것이다. 설사 운동가가 운동을 접는다 해도.

그런 의미에서는, 소녀상은 위안부 자신이라기보다는 정대협의 이상을 대변하는 상이다. 다시 말해 소녀상은 ‘그때의 조선인 위안부’라기보다는 ‘20여 년의 데모’와 운동가가 된 위안부이다.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효순/미선의 부모는 “억울한 내 딸 두 번 죽이지 마라”(『주간 동아』, 2003.6.26.), “이제 가족들만 단출하게 모여 그 애들을 생각하고 싶다”(『조선닷컴』, 2012.6.4.)고 말했다고 한다. 그건 그들이 바로 소녀들의 부모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딸들이 언제까지고 ‘미국에 의한 피해자’로 기억되면서 ‘민족의 소녀’가 되어 ‘반미’의 상징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자 소녀’의 이미지는 아름다운 숙녀로 자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을 ‘나의 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 그것은 소녀들은 물론이지만 부모들에게서도 안식과 평화를 뺏는 일이 된다.

일본에게 입은 피해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사관 앞 소녀상은 절반의 진실을 나타낼 뿐이다.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식민지인이었기에, 하나의 기억만을 가질 수는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소녀상은 이제 한국 안의 다른 장소(통영, 공주 등)로, 그리고 미

국에까지 확산되는 중이다. 미국에 설립된 위안부 기림비는 ‘강제로 끌려간 20만 명의 소녀’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그런 한 그 비는 ‘위안부’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식 기억’을 표현한 것일 뿐 위안부 자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것은 일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기억만을 내세울수록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또 다른 기억만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자의 기억만 고수하는 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오지 않는다.

‘위안부’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세워져야 하는 장소는 위안소가 있었던 장소이거나 그녀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장소가 더 적절하다. 또 원한보다는 슬픔을, 분노보다는 절망을, 그리고 일제에 의해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의 모순을 표현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다. 지금의 소녀상은 ‘평화’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 상이 일본의 굴복만을 요구하는 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소녀상은 언제까지고 평화 아닌 불화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실제로 2011년 겨울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의 한일관계가 극단적으로 불화로 치달았던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소녀상은 우익뿐 아니라 한국에 호의적이었던 양심적인 일본인까지도 한국에 등을 돌리거나 무관심해지도록 만들었다. 소녀상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을 뿐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 역시, “협력”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거세” 즉 “은폐”에 방점이 찍힌 대목입니다. 그리고 위안부가 아니라 소녀상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안부의 협력에 대해 기술했다는 사실이나, 이 문장은 그저 앞서의 서술을 전제로 쓰고 있을 뿐, 새로이 협력에 대해 쓴 부분이 아닙니다. 더구나 애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은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로 전제하면서(207면 2줄-3줄),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그들은, ‘한복’을 입은 땡기머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207면 3줄 - 9줄)라는 점을 “협력”이라고 다시 말했을 뿐입니다.

(3)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세”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 지적의 방점은 협력이 아니라 “거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지원단체가 소녀상으로만 표현해 협력의 기억을 지우고 만 “거세”라는 단어’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검찰은 앞뒤 맥락을 살피지 않은 채, 이 글을 ‘위안부의 협력’에 대해 지적인 글로 착각/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순번 25, 책 208쪽>

### 1. 검찰 기소 내용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애국적 또는 자긍적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04면 5줄 - 209면 끝줄

2011년 12월에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서게 된 소녀상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정대협이 생각하는 '위안부'상의 결정판이다.

소녀상은 분명 성노동을 강요당한 '위안부'를 상징하는 상일 텐데, 성적 이미지와는 무관해 보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다. 말하자면 대사관 앞에 서 있는 것은 위안부가 된 이후의 실제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다. 혹은 앞에서 살펴본, 위안부의 평균 연령이 25세였다는 자료를 참고한다면, 실제로 존재한 대다수의 성인 위안부가 아니라 예외적인 존재였던 위안부만을 대표하는 상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사관 앞 소녀상이 실제 위안부를 상징하는 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소녀상은 마치 '위안부'의 대부분이 소녀였던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소녀 위안부'의 기억을 강화시켜 나간다.

소녀의 단발머리는 그녀를 단정한 학생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학교교육을 아예 혹은 조금밖에 받지 못한 이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소녀상은 실제 조선인 위안부와는 거리가 있다.

소녀가 맨발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끌려갔다는 것을 상상하도록 만든다. 주먹을 쥐고 쏘아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은 '강제로 끌려간'데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다. 말하자면 소녀상은 '저항하는 위안부'일 뿐 일본군과의 다른 관계

는 드러내지 않는다. 혹은 그 분노가 '일본군'이외의 존재를 향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소녀상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저항하고 싸우는 소녀'의 모습이야말로 한국인이 자신과 오버랩시키고 싶어하는 아이덴티티로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소녀상이 한복을 입고 있는 것은 실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리얼리티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위안부'를 바람직한 '민족의 딸'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그러다 보니 소녀상은, 그녀가 때로 가족을 위해 나섰던 희생정신도, 아들이 아닌 딸이 팔려가기 쉬웠던 가부장제하의 피해자성도, 그녀들을 '강제로 끌고 간' 우리 안의 가해자들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녀상은 일본에 저항해 목숨을 잃은 유관순을 아주 많이 닮아 있다.

소녀상이 저항하는 모습만 표현하는 이상, 일본옷을 입었던 일본이름의 '조선인 위안부'의 기억이 등장할 여지는 없다. 그들의 또 다른 생활과 기억, 일본 군인을 간호하고 사랑하고 함께 놀며 웃었던 기억을 가진 '위안부'는 그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곳에는 군인을 자신과 같은 운명에 떨어진 가엾은 존재로 간주하고 동정했던 위안부도 물론 없다.

소녀상에는 '평화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러나 용서의 기억을 소거한 눈은 원한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는 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적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일본보다 조선이 더 밍다'는 위안부들 역시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곳에는 '조선인 위안부는 없다'.

그녀들이 해방 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즉 '더럽혀진' 여성을 배척하는 순결주의와 가부장적 인식도 오랫동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성적으로 더럽혀진 기억만이 아니다. 일본에게 협력한 기억, 그것 역시 그녀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말하자면 '더럽혀진' 식민지의 기억은 '해방된 한국'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저 협력과 오욕의 기억을 당사자도 보는 이도 함께 소거해버린 '민족의 피해자'로서의 상일 뿐이다.

소녀가 '성처녀'로서의 '순결'과 '저항'의 이미지만 담고 있는 것은 그래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소녀상은 부끄러운 기억을 망각하거나 규탄하여 '우리' 밖으로 내몰아온 해방 후 60여 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해방 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총체적인 우리 자신을 끌어안고 넘어서려 하지는 않았던 세월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한, '피해자' 소녀에게 목도리를 돌려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들이, 그녀들이 일본옷을 입고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똑같은 손으로 그녀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위안부가 되기 전에 그렇게 어린 '소녀'를 내몬 '손' 또한 우리 안의 또 다른 손이기도 했다는 것은 잊은 채로.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저항했으나 굴복하고 협력했던 식민지의 슬픔과 굴욕을 한 몸에 경험한 존재다. '일본'이 주체가 된 전쟁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군이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했던 '노예'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성을 제공해주고 간호해주며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를 향해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그들은, '한복'을 입은 땡기머리 조선인이기도 했지만, 일본옷을 입고 일본머리를 한 청초한 '야마토 나데시코'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조선인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모순'을 가장 처절하게 살아낸 존재였다.

협력의 기억을 거세하고 하나의 이미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미지만을 표현하는 '소녀'상은 협력해야 했던 '위안부'의 슬픔은 표현하지 못한다. '위안부'가 되기 전의 순수한 모습만을 기억하는 것은 '더럽혀지기 전의 우리 자신을 상상하고 간직하는 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식민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것을 여전히 외면하는 일이다. 따라서 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조선인 위안부'도 아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없다.

위안부가 대표하는 '식민지' 체험은 '기념'되고 '현창'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체험이다. '위안부'가 '유관순'일 수 없는 것은 그 점에 있다. 물론 일제가 만든 시스템과 인프라를 향유한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순을 내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식민지화란 구성원 누구나가 분열증을 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혹한 존재이긴 했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그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배척과 말살의 대상이 되었던 홀로코스트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대협은 최근 들어 위안부 문제를 ‘홀로코스트’에 비견하지만(『홀로코스트 위안부 다음달 역사적 만남』, 『연합뉴스』, 2011.11.21.),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극소수이니 위안부와는 구조가 다르다). 그런 차이를 무시한 일은 우리 자신을 ‘완벽한 피해자’로 상상하려는 왜곡된 욕망의 표현일 뿐이다.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위안부’에게 종용한 것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은 일상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지내는 일, 즉 ‘민족의 딸’로 존재해주는 일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을 그녀들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다.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하는 2011년 12월 14일에 위안부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이유는 거기에 있다. 위안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다 해도, 소녀는 계속 그곳에서 일본을 규탄할 것이다. 설사 운동가가 운동을 접는다 해도.

그런 의미에서는, 소녀상은 위안부 자신이라기보다는 정대협의 이상을 대변하는 상이다. 다시 말해 소녀상은 ‘그때의 조선인 위안부’라기보다는 ‘20여 년의 데모’와 운동가가 된 위안부이다.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효순/미선의 부모는 “억울한 내 딸 두 번 죽이지 마라”(『주간 동아』, 2003.6.26.), “이제 가족들만 단출하게 모여 그 애들을 생각하고 싶다”(『조선닷컴』, 2012.6.4.)고 말했다고 한다. 그건 그들이 바로 소녀들의 부모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딸들이 언제까지고 ‘미국에 의한 피해자’로 기억되면서 ‘민족의 소녀’가 되어 ‘반미’의 상징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자 소녀’의 이미지는 아름다운 숙녀로 자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을 ‘나의 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 그것은 소녀들은 물론이지만 부모들에게서도 안식과 평화를 뺏는 일이 된다.

일본에게 입은 피해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사관 앞 소녀상은 절반의 진실을 나타낼 뿐이다. ‘조선인 위안부’란 조선인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식민지인이었기에, 하나의 기억만을 가질 수는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소녀상은 이제 한국 안의 다른 장소(통영, 공주 등)로, 그리고 미

국에까지 확산되는 중이다. 미국에 설립된 위안부 기림비는 ‘강제로 끌려간 20만 명의 소녀’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그런 한 그 비는 ‘위안부’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식 기억’을 표현한 것일 뿐 위안부 자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것은 일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기억만을 내세울수록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또 다른 기억만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자의 기억만 고수하는 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오지 않는다.

‘위안부’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세워져야 하는 장소는 위안소가 있었던 장소이거나 그녀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장소가 더 적절하다. 또 원한보다는 슬픔을, 분노보다는 절망을, 그리고 일제에 의해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의 모순을 표현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다. 지금의 소녀상은 ‘평화’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 상이 일본의 굴복만을 요구하는 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소녀상은 언제까지고 평화 아닌 불화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실제로 2011년 겨울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의 한일관계가 극단적으로 불화로 치달았던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소녀상은 우익뿐 아니라 한국에 호의적이었던 양심적인 일본인까지도 한국에 등을 돌리거나 무관심해지도록 만들었다. 소녀상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을 뿐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은, 피고인이 ‘지원단체가 홀로코스트 관계자들과 위안부를 만나게 한 것이 위안부 문제를 홀로코스트 문제와 동일시한 결과’로 판단하고, 그러한 ‘인식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입니다.

(2) 여기서도 피고인은 위안부를 비판하는 일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지원단체의 문제 이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무시한 일은 우리 자신을 ‘완벽한 피해자’로 상상하려는 왜곡된 욕망의 표현” (208면 3줄-4줄)이라고 표현하여, ‘그런 운동 방식을 취한 지원단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위안부에 관한 것으로 지적한 것은 이 책이 ‘지원단체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은폐하고, 일반 사람들이 이 책이 ‘위안부에 대한 비판’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은폐해 왔던 양상을 그저 국민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의식의 발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말한 부분이 아닙니다.

(3) 협력의 양상을 드러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한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이미 앞선 항목에서 밝혀왔습니다.

위안부가 “자신의 성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신체를 유린당한 피해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즉 피해자임을 충분히 밝히고 있음에도, 또한 “협력자”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위안부가 피해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님에도, 검찰은 단어 하나 하나에 집착해 그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편협함’과 ‘다른 한편의 과장’이, 위안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 했을 뿐입니다.

## <순번 26, 책 215쪽>

### 1. 검찰 기소 내용

그러나 일본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사죄를 제안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이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 위안부 동원의 비강제성 강조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부정)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15면 21줄 - 216면 2줄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죄했고, 2012년 봄에도 다시 사죄를 제안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대협이 주장하는 국회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1965년의 조약, 그리고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는 점,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여서 개인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한 '국가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관하여는 앞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일본이 조선인 업자들의 일탈을 충분히 단속하지 못한 점과 유괴가 횡행하는데도 모집을 중단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곽으로 데려가지는 여성들 대부분이 인신매매를 경유하고 업자의 횡포에 울었던 것은 일본인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하자면 단속하지 않은 것 역시 조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런 식의 일방적 권력의 존재는 군이 시스템을 ‘관리’한 관리자라는 사실, 다시 말해 ‘관여’했을 뿐 아니라 주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군이 모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군의 관여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이유다. 군이 물리적으로 행사한 ‘강제연행’을 글자 그대로 ‘강제’, ‘연행’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강제연행’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사기든 납치든 업자와 포주들이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일이 빈번했던 위안소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범자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살인교사와 비슷한 구조일수밖에 없고, 그런 시스템을 필요로 한 것이 군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군인에 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강제’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당연하다.” (152면 8줄-19줄), “ ‘위안부’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온건했고 좋은 통치였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온건하고 좋은 통치란 어디까지나 체제에 저항하지 않는 이들에게 한정된 것이었다.” (153면 1줄-3줄), “ ‘위안부’모집에서 업자와 포주들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바로 그래서라고 이해해야 한다. ‘온건통치’의 범주에 ‘자발적으로’ 편입된 이들이 ‘개인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자신들의 손은 더럽히지 않고 (온건통치를 유지하면서) 식민지인들에

게 불법행위를 전담시켜 그들을 동족에 대한 가해자로 만들었다.”(153면 12 줄-16줄)라고 서술함으로써, 명확하게 일본을 비판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안부 동원에서 강제의 주체가 군이 아니라는 점 또한 학자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려면 검찰은 군이 강제로 끌어오라고 지시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는 군이 업자에게 본인의 의지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자료, 어쩌다 속아서 왔을 경우나 너무 어릴 경우 돌려보낸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 <순번 27, 책 246쪽>

### 1. 검찰 기소 내용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45면 끝줄 - 246면 8줄

쿠마라스와미의 '위안부'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정대협이 인식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증언 가운데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끔찍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북한 여성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우연일까. 아무튼 문제는 이후에 나오는 의견서들이 대부분 이 보고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런 쿠마라스와미조차 '위안부'의 상황을 '강요된 매춘'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안부들을 세 가지-자발적인 매춘업, 음식점이나 세탁부로 갔다가 '위안'을 하게 된 경우, 강제연행-로 분류하는 등 '위안부'의 모습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은 '정대협이 "세계"가 지원단체(한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자료로서 제시한 자료들(유엔보고서 등)을 검토한 부분입니다.

(2) ‘위안소가 기본적으로는 관리매춘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심지어 ‘1992년의 정부 보고서’도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사죄와 보상을 권고한 유엔보고서(쿠마라스와미 보고서)’도 ‘일본군을 위한 출장매춘부를 제공하는 위안소’, ‘매춘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리 하에 두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충자료로서 1992년의 정부 보고서 해당 부분 및 ‘유엔 보고서’ 해당 부분을 제출합니다.

## <순번 28, 책 265쪽>

### 1. 검찰 기소 내용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 위안부가 일본국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64면 15줄 - 265면 4줄

또 한 가지 기금의 실책은 '위안부'들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위안부'가 존재했던 국가는 일본, 대만,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6개국 및 그 지역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각각 달랐다. 말하자면 주둔지의 일반 지정매춘업소에서의 '단순매춘'과 전쟁터에서의 '위안'과 '위안체제 속의 강간'과 (점령지나 전쟁터에서의 상대국 여성을 향한) '단순강간'을 구별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필리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점령지', 즉 전쟁터에서의 일이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네덜란드' 여성과 인도네시아 여성과 조선인 여성은 일본군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다르다. 일본군에게 네덜란드 여성은 '적의 여자'였지만, 인도네시아의 여성은 점령지의 여성이었고, 조선인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다. 그녀들이 입은 피해의 형태는 기본적인 관계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그런 기본관계를 벗어난 관계도 얼마든지 있었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은,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사죄와 보상’에 대해 설명한 부분입니다.

(2) 그리고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평가하면서도, 오랫동안 혼란을 야기한 이유의 하나로 ‘경우가 다른 여성들을 무조건 같은 “위안부”로 간주하고 보상한 일’로 설명하면서, “또 한가지 기금의 실책은 ‘위안부’들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위안부’가 존재했던 국가는 일본, 대만,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6개국 및 그 지역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각각 달랐다. 말하자면 주둔지의 일반 지정매춘업소에서 ‘단순매춘’과 전쟁터에서의 ‘위안’과 ‘위안체제 속의 강간’과(점령지나 전쟁터에서의 상대국 여성을 향한) ‘단순강간’을 구별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필리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점령지’, 즉 전쟁터에서의 일이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264면 15줄-22줄)라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똑 같은 위안부로 간주되었던 이들의 나라를 ‘점령지/전쟁터’와 ‘본토/식민지’로 구별합니다.

(3)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네덜란드는 일본에 있어 인도네시아를 지배한 제국이자 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독립’시킨다는 명분이었으므로 “점령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인은 식민지가 된 결과로 “일본인”으로서 그 공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같은 일본인”(265면 2줄)이란 어디까지나 국적을 말합니다.

“동지적 관계”(265면 3줄)라는 개념이, 그저 “적”이 된 나라와의 차이

를 말하기 위해 가져온 것일 뿐이고, 정말로 일본인(여성)과 같은 대우를 받았거나 차별이 없었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즉 민족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여러 번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경우를 벗어난 계급적/ 정서적 유대감도 존재하였던 점’ 역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들이 입은 피해의 형태는 기본적인 관계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그런 기본관계를 벗어난 관계도 얼마든지 있었다” (265면 3줄-4줄)는 서술은 그런 정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4)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적은, 그러한 일이 ‘한국과 네덜란드의 차이’를 보지 못하고, ‘제국의 여성들, 말하자면 인도네시아를 점령해 인도네시아에 와 있던 네덜란드 이주민 여성들’과 ‘피식민지의 여성들, 말하자면 조선인 피해 여성들’이 연대하는 일의 모순 및 그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선인 위안부 출신 여성이 인도네시아 여성을 고용해 위안소를 경영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은, 조선인이 “일본인”으로서 그곳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러한 정황을 “동지적 관계”로 표현한 것이며, 이는 허위가 아닙니다.

## <순번 29, 책 265쪽>

### 1. 검찰 기소 내용

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가 '전쟁'을 매개로 한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 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65면 16줄 - 299면 1줄

한국이나 대만에서 보상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 두 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관계성에 있다. 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가 '전쟁'을 매개로 한,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동원된 '제국의 피해자'이면서, 구조적으로는 함께 국가 협력(전쟁 수행)을 하게 된 '동지'의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 역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조선인은 네덜란드 여성의 경우인 "강제매춘"과는 조금 양상을 달리 한 존재였음을 말하려 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이지만 동지적 측면을 띤 복잡한 존재’인데도, 그 부분을 보지 않고 군의 물리적 강제와 똑같이 간주한 결과, 국가배상이 필요하다. 법적책임이 있다고 지원단체가 생각한 것임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조선인 위안부가 협력을 해야 했던 양상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번 30, 책 291쪽>

### 1. 검찰 기소 내용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100)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 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90면 5줄 - 291면 11줄

위안부는 일본의 전시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한다. 지금의 기지촌 여성들 역시 현대의 ‘위안부’이고, 군대가 존재하는 곳이면 ‘위안부’는 어느 곳이건 존재했다.

일본인 위안부들은 이미 “메이지 초기부터 아시아 각지에 존재”(야노 도루, 41쪽)했고, 그녀들이 일본에서 ‘낭자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메이지 30년대 초(1890년대 말)부터였다(42쪽). 그리고 “러일전쟁 직후의 번성기에는 수마트라의 메단 부근까지 포함해 6000명의 낭자군이 한 해에 1000만 달러의 수입을 얻었다”(43쪽).

이 무렵에는 “일본이 세력을 확대한 각지에 공창 제도가 이식”(야마시타 영애, 109쪽)되었고, “일본인 예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규칙이 영사관령으로서 제정되었다”(후지나가 다케시, 206쪽). 전국에 적용되는 ‘단속규칙’이 나온 것은 1916년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수많은 조선인 성매매 관련 업자가 관동주나 남만주 철도 연선 각지에 퍼져”(209쪽) 있었다. 1928년에는 일본인 창부가 부족해져서, 조선인과 중국인 창기를 고용하고 성병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207쪽). 하지만 조선인 창기는 1920년대 초부터 이미 대만에 들어가 있었다(206쪽).

‘조선인 위안부’란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중국의 여성들이 일본의

공창 제도의 최하층에 편입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의 '위안소'의 최대 공급원”(110쪽)이 되면서 생긴 존재였다. 그리고 전쟁이 본격화되어 수백만에 이르는 군대가 주둔하고 오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군인들과 함께할 위안부로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 제국'의 여성들이 선택된 것이다(업자나 위안부 자신이 선택했을 수도 있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이 부분은 마지막 챕터로서, 앞에 쓴 내용을 총정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구체적으로는 앞에 설명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 또한 조선인 위안부와 식민조선에 이식된 공창제와의 관계를 논한 학자는 피고인 이외에도 있습니다. 이 서술 부분은 그 중 한 사람(山下英愛)의 책을 인용하며 앞서의 논증을 확인한 부분입니다(후지나가다케시藤永士, 송연옥宋蓮玉, 구라하시倉橋 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위안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서술은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다른 학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일 뿐입니다. 지극히 성급한 오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순번 31, 책 294쪽>

### 1. 검찰 기소 내용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94면 5줄 - 295면 2줄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업자가 인솔해서 갔겠지만, 그것은 ‘왕언니’가 미군의 팀스피리트 훈련지에까지 간 것 같은 ‘원정’이었다.

‘조선인 군인’들에게는 ‘조선인 위안부’는 ‘비싸’서 이용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현지 여자는 주로 병정들이 상대”했다는 것은 ‘위안’이라는 행위가 ‘인간의 상품화이자 계급화’였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조선인 위안부’가 제국 내에서 놓여 있었던 위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일본인들에게 차별받는 대상이면서도, 그들은 말이 통하고 외모가 일본인과 비슷하며 같은 ‘동족’으로서 기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서 ‘일본인 위안부’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애국봉사관’이라는 곳에는 조선인 여성이 많았”(문태복.홍종목, 72쪽)고 그런 곳을 포함한 현지 위안소를 조선인 군속들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같은 책, 74쪽)은 허가를 받아 이용했다. 물론 그들 역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걸, 사양할 필요는 없어’, 모두가 그런 기분”(기요카와 고지.사쿠라이 구니토시, 65쪽)이었다.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순간부터 걸어낼 수 없게 된 모순이었다. 우리가 ‘조선인 위안부’의 다양한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것은 그런 식민지의 모순을 직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위안부가 낭자군으로 불리게 된 경위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명칭 자체가, 군인을 돕는 존재였음을 보여 줍니다. 실제로 위안부 자신도 “우리는 군인”(강제 3-246)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위안부를 “준군인 같은 존재”로 설명한 것은 수류탄을 나르고 총 쏘기를 연습하는 위안부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앞에서 서술).

동지적관계임을 설명하는 자료는 자료집에서도 추가 제출합니다.

## <순번 32, 책 294쪽>

### 1. 검찰 기소 내용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94면 5줄 - 295면 2줄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업자가 인솔해서 갔겠지만, 그것은 '왕언니'가 미군의 틴스피리트 훈련지에까지 간 것 같은 '원정'이었다.

'조선인 군인'들에게는 '조선인 위안부'는 '비싸'서 이용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현지 여자는 주로 병정들이 상대"했다는 것은 '위안'이라는 행위가 '인간의 상품화이자 계급화'였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조선인 위안부'가 제국 내에서 놓여 있었던 위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일본인들에게 차별받는 대상이면서도, 그들은 말이 통하고 외모가 일본인과 비슷하며 같은 '동족'으로서 기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서 '일본인 위안부'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애국봉사관'이라는 곳에는 조선인 여성이 많았"(문태복.홍종묵, 72쪽)고 그런 곳을 포함한 현지 위안소를 조선인 군속들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같은 책, 74쪽)은 허가를 받아 이용했다. 물론 그들 역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걸, 사양할 필요는 없어', 모두가 그런 기분"(기요카와 고지.사쿠라이 구니토시, 65쪽)이었다.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순간부터 걸어낼 수 없게 된 모순이었다. 우리가 ‘조선인 위안부’의 다양한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것은 그런 식민지의 모순을 직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 역시 위안부의 증언집을 바탕으로 기술된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위안부를 “국가의 세력 확장에 동원된 여성들”로 앞에서 정의했으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조선인 남성들 역시 징병/징용 형태로 동원되었으며, 위안부 역시 그들과 비슷한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들이 징집되게 된 것이 식민지통치하였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따로 제출하는 자료집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순번 33, 책 294쪽>

### 1. 검찰 기소 내용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94면 5줄 - 295면 2줄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에까지 함께 가게 된 건 똑같이 ‘일본 제국’의 구성원, ‘낭자군’으로 불리는 ‘준군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업자가 인솔해서 갔겠지만, 그것은 ‘왕언니’가 미군의 틴스피리트 훈련지에까지 간 것 같은 ‘원정’이었다.

‘조선인 군인’들에게는 ‘조선인 위안부’는 ‘비싸’서 이용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현지 여자는 주로 병정들이 상대”했다는 것은 ‘위안’이라는 행위가 ‘인간의 상품화이자 계급화’였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조선인 위안부’가 제국 내에서 놓여 있었던 위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일본인들에게 차별받는 대상이면서도, 그들은 말이 통하고 외모가 일본인과 비슷하며 같은 ‘동족’으로서 기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서 ‘일본인 위안부’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들이 ‘낭자군’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녀들이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군대’의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애국봉사관’이라는 곳에는 조선인 여성이 많았”(문태복.홍종묵, 72쪽)고 그런 곳을 포함한 현지 위안소를 조선인 군속들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같은 책, 74쪽)은 허가를 받아 이용했다. 물론 그들 역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걸, 사양할 필요는 없어’, 모두가 그런 기분”(기요카와 고지.사쿠라이 구니토시, 65쪽)이었다.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

**다. 그것은 그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순간부터  
걸어낼 수 없게 된 모순이었다. 우리가 '조선인 위안부'의 다양한 모습  
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것은 그런 식민지의 모순을 직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협력의 여러 양상은 , 앞에서의 설명과 추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순번 34, 책 296쪽>

### 1. 검찰 기소 내용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임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296면 12줄 - 20줄

'식민지화'는 필연적으로 지배하에 놓인 이들의 분열을 불러온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은 종주국에 대한 협력과 순종의 기억은 우리 자신의 얼굴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과거의 다른 한쪽을 망각하는 방식으로 해방 60여 년을 살아온 결과 현대 한국의 과거에 관한 중심 기억은 저항과 투쟁의 기억뿐이다. '친일파'—일본에 협력한 자를 우리 자신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간주하고 색출하고 비난하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그들이 '바람직한 우리'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 3. 피고인의 주장

(1) 여기서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은 “강제로 끌려간 소녀”라는 담론에 구애하는 일이, ‘매춘에 종사한 이였다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자발적으로 간 이가 있다 해도, 구조적 강제성 하에서 간 것인 이상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부모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이기도 하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고소인과 검찰의 이러한 지적은 ‘위안부가 많은 경우 군인에게 강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관리매춘하에 놓였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2) 피고인은 “ ‘조선인 위안부’를 ‘일본군’이 직접 ‘강제로 끌어간’ 존재이고 그들을 ‘감금’한 것도 일본군이고 모든 군인은 포악하고 모든 위안부는 ‘순진한 어린 소녀’로만 간주하는 일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안부(이른바 ‘매춘부’를 포함)들을 배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의 피해자성을 희석시키고 싶지 않은 피해자로서의 욕망이 시키는 일이지만, 표면적인 모습이 ‘완벽한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들 역시 피해자이고 희생자였다.”(295면 7줄-13줄)라고 서술하여, “그들 역시 피해자이고 희생자”라고 지적하는 것은, 위안부에 관해 정확히 설명하기는 하지만 결코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자란 한 사람의 조선인 위안부

가 그 두 얼굴을 갖는 것은 ‘식민지화’된 순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식민지화되었던 우리 자신, 우리의 과거와 화해할 수가 없다.” (295면 14줄-17줄)고 서술한 부분은 피고인의 집필 의도가 위안부 문제를 매개로 우리 사회의 성숙을 지향하는데 있음을 보여 줍니다.

나아가 “그러는 사이,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은 얼굴만을 굳이 확대해서 보려 하는 일본인들이 늘어가는 중이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들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 본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그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거나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만 기억하려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의 또 하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들 방식대로 보는 일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295면 2줄-296면 3줄)고 하는데서 드러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말하는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부인한 것은,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한 의식이 만든 것이지만 일본이 만든 구조속의 일이니 수치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 피고인의 문제의식은, “지금 세계가 아는 위안부 문제에는 ‘조선인 위안부’는 ‘없다’. ‘위안부의 대부분’이 조선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왜 조선인 위안부가 많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게 된 것이다.”(297면 첫줄-3줄)라는 서술에서 보이듯이, 이 문제를 ‘식민지 지배의 문제’로 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사라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4) 이상이 ‘매춘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의도’입니다.

## <순번 35, 책 306쪽>

### 1. 검찰 기소 내용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뿐이다.

→ 위안부가 일본국에 협력자이었음을 표현

### 2. 위 1.항 기재 서술 부분의 앞뒤 문맥---책 306면 8줄-13줄

지금 필요한 일은, 그들을 '올바른 조선인 투사'로 존재하게 하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아니다. 그저 그들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중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일본의 적국 여성들의 '완벽한 피해'의 기억을 빌려와 덧씌우고, 조선 여성들의 '협력'의 기억을 벗겨낸 소녀상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딸'로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와 국가의 희생자였던 '위안부'를 또 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뿐이다.

### 3.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 역시 '매춘이나 협력정황을 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일 뿐, 위안부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지원 단체의 운동은 이대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은 “위안부를 또다시 국가를 위해 희생시키는 일”일 수 있기에 지원단체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협력이나 애국, 그리고 동지적 관계의 정황을 정확하게 보려 한 피고인의 작업’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온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은 책 안에서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비판받았다는 이유로 책을 왜곡한 원고의 고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한민국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당한 것처럼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터이니 그렇습니다.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위안부를 비난받을 걸 알면서 굳이 책을 통해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디 공평한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2016. 5. .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김 용 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중**